

발간등록번호

51-6113159-000006-01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2018. 9.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제1장 서론

| | |
|-----------------|---|
| 제1절 연구필요성 | 2 |
| 제2절 연구목적 | 4 |

제2장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 |
|----------------------------------|----|
| 제1절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 7 |
| 1.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목표 | 7 |
| 2. 공공도서관의 행정서비스 제공 구조 | 7 |
| 3. 상이한 주체에 의한 유사·중복 서비스 제공 | 8 |
| 제2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10 |
| 1. 전국 | 10 |
| 2. 서울특별시 | 18 |

제3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과 이해관계 구도

| | |
|-------------------------|----|
| 제1절 서울시 행정수행 체계 | 37 |
| 1. 교육제도와 지방자치 | 37 |
|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이원화 | 37 |
| 제2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구조 | 40 |
| 1. 서울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 | 40 |
| 2. 서울도서관과 자치구도서관 | 44 |
| 3. 교육청도서관과 자치구도서관 | 44 |
| 제3절 관계자 입장 | 46 |

제4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 | |
|--|----|
| 제1절 기본방향 | 48 |
| 1.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확보 | 48 |
| 2. 서비스전달체계의 일원화 | 51 |
| 제2절 세부내용과 단계 | 52 |
| 1. 서울도서관에 지역대표도서관 기능부여 | 52 |
| 1) 정책 가이드라인 | 52 |
| 2) 인프라 가이드라인 | 53 |
| 3) 인력 가이드라인 | 53 |
| 4)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 54 |
| 2. 공공도서관 구조일원화 | 54 |
| 1) 구조개선 1단계 | 54 |
| 2) 구조개선 2단계 | 55 |
| 3) 구조개선 3단계 | 57 |
| 4) 구조개선 4단계 | 61 |
| 5) 구조개선 4과제 | 63 |
| 3. 공공도서관 이용규정 정비 | 66 |
| 제3절 갈등관리 방안 | 67 |
| 1. 불이익방지과 공익봉사 원칙 | 67 |
| 2. 교육청도서관의 광역편입 원칙 | 69 |
| 3. 3개년 단계추진 원칙 | 69 |
| 제4절 법제도적 실행 방안 | 71 |
| 1. (가칭)‘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 조례’ 제정 | 71 |
|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 76 |
|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 77 |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1절 연구필요성

1. 배경

○ 1920년대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공공도서관은 종로도서관과 남산도서관 등 22개관으로 모두 교육청에 소속되어 운영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1999년부터 금천구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120여 개의 구립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대 핵심이슈(사람중심도시, 글로벌 상생도시, 즐거운 문화도시, 안전도시, 주민공동체 도시)를 설정하였다.

- “즐거운 문화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2012.6.14, 시장 방침 제208호)을 세우고 2012년 10월에는 서울도서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표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문화부문 및 공공도서관 정책¹⁾

| 핵심이슈 | 목표 | 전략 | 문화기반시설 확충 목표 |
|-------------------|------------------------|---|--|
|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 문화생태 네트워크 형성 |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인구 10만 명 당 문화기반 시설수 : 2013년 2.8개, 2020년 3.5개, 2030년 4.5개 |

1)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원대한 비전 -몽상과 반역을 위한 고뇌-” 발제문(2017), 8면.

2. 필요성

○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 하에 설치된 서울도서관은 그 동안 광역 단위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교육청·자치구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더불어 2030 서울플랜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도서관-교육청 소속 도서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들 세 형태의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질 높은 수준의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및 정책적인 기반을 조성하되 외국 주요 도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의 시사점을 참고하며, 전달체계의 구축에 따른 기존 이해 관계자들과의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적절히 해소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1.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방안 모색

○ 서울시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정책(위의 시장 방침 제208호)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 25개 자치구 내의 공공도서관 간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하고 확정하고자 한다.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 간 지식정보 업무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고 효과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2. 교육청 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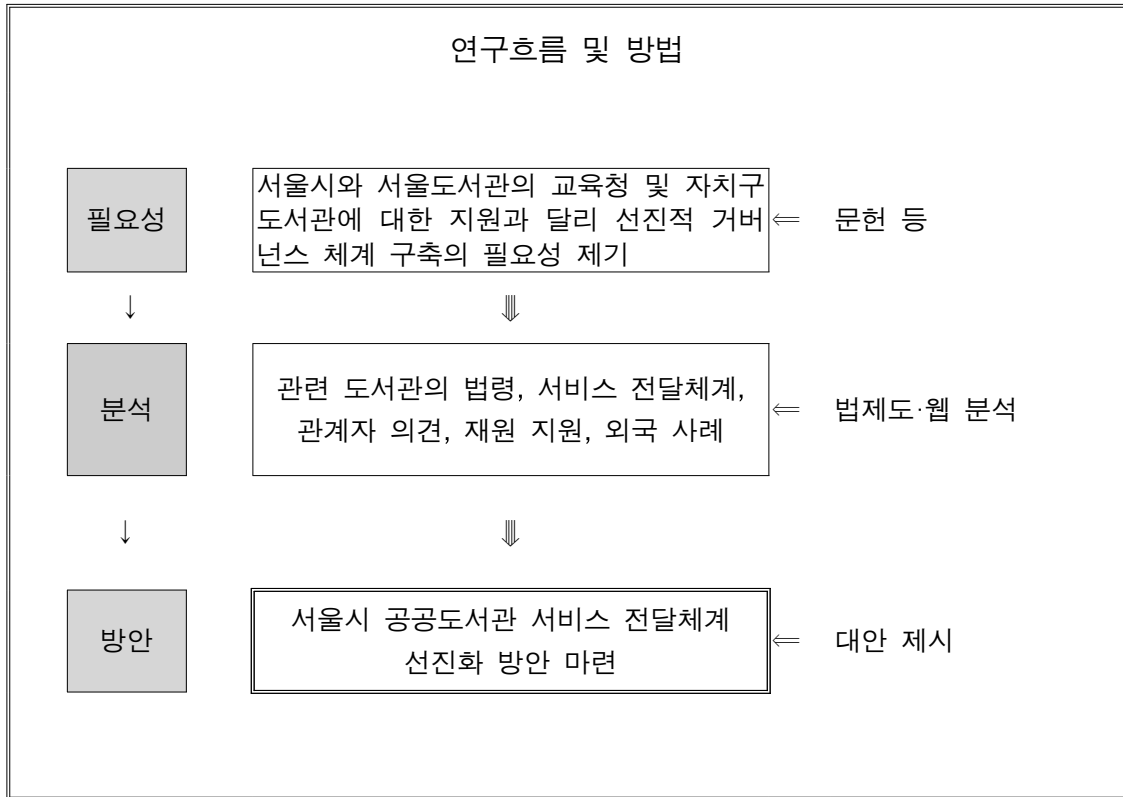
○ 기존의 선행연구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공상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

-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서울시 내로 한정하여 서울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서울도서관 건립 이후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과의 정책적 행정서비스 제공 네트워크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해 봄으로써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이원체제를 일원화

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졌던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표 2> 연구틀



제2장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제2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1.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목표

○ 「도서관법」 제4장의2에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것의 설치(제22조), 업무(제23조) 등을 정하고 있다.

- 동법에 따라 입법자가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2조 4호).

- 위 조문에 따를 때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공중에게 정보이용과 독서활동, 문화활동과 평생교육²⁾을 위해 존재하는 인적 및 물적 시설로서 이해된다.

- 동법은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로 국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법인, 단체, 개인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4호).

2. 공공도서관의 행정서비스 제공 구조

○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

2)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세계의 도서관이 지향하고 발전해 가는 기능적 방향성을 보면 문화와 예술을 품어내는 역할에 방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조금주,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2018), 259면 이하 참조.

자치단체 라고 하는 3층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자신이 설치한 기관을 통해 수행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임조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집행한다.

-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또한 국가의 모든 도서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각 시·도에 설치되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도서관”³⁾에 의해 「도서관법」상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군·군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문화서비스로 전달된다.

3. 상이한 주체에 의한 유사·중복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문화정보서비스가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 체계라 할 수 있다.

- 국가의 3층적 일반행정서비스 전달체계와 유사하게 공공도서관에 의한 행정서비스 체계도 국가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3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의해 제공되고, 다른 일면 교육감소속의 교육청 지배를 받는 공공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2중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실제에 있어 유사·동일한 문화행정서비스를 교육청 소관과

3) 제2조 3의2호: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특별시장소관의 공공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이한, 그래서 애초에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를 통해 가장 최적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2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전국

1) 개관

○ 소속별 공공도서관 통계

-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1,042관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상황이다. 이를 각 설립 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립 공공도서관은 20개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231개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791개관이 존재한다.

<표 3>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 권, %)

| | 2013년 | 2014년 | 증감률 | 2015년 | 증감률 | 2016년 | 증감률 | 2017년 | 증감률 | 5년간 증감률 |
|-----|-------|-------|------|-------|------|-------|------|-------|------|------------|
| | | | | | | | | | | |
| | 865 | 930 | 7.5 | 978 | 5.2 | 1,010 | 3.3 | 1,042 | 3.2 | 4.8 |
| 지자체 | 614 | 679 | 10.6 | 725 | 6.8 | 758 | 4.6 | 791 | 4.4 | 6.5 |
| 교육청 | 232 | 232 | 0.0 | 232 | 0.0 | 231 | -0.4 | 231 | 0.0 | -0.1 |
| 사립 | 19 | 19 | 0.0 | 21 | 10.5 | 21 | 0.0 | 20 | -4.8 | 1.3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7로부터 재인용

2) 장서 현황

<표 4> 공공도서관 설립주체별 1관당 도서(인쇄)자료 수

(: 권, %)

| | 2013년 | 2014년 | 증감률 | 2015년 | 증감률 | 2016년 | 증감률 | 2017년 | 증감률 | 5년간 증감률 |
|-----|---------|---------|------|---------|------|---------|------|---------|-----|------------|
| | | | | | | | | | | |
| | 97,075 | 96,361 | -0.7 | 95,949 | -0.4 | 97,845 | 2.0 | 100,734 | 3.0 | 0.9 |
| 지자체 | 85,031 | 84,068 | -1.1 | 83,744 | -0.4 | 85,818 | 2.5 | 89,265 | 4.0 | 1.2 |
| 교육청 | 133,876 | 137,072 | 2.4 | 139,558 | 1.8 | 143,079 | 2.5 | 145,638 | 1.8 | 2.1 |
| 사립 | 36,928 | 38,579 | 4.5 | 35,545 | -7.9 | 34,391 | -3.2 | 35,716 | 3.9 | -0.8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0로부터 재인용

○ 전체 공공도서관 1관 당 장서 수를 보면, 최근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 3.0%(100,734권)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13년 1.64권, 2014년 1.75권(6.7% 증가), 2015년 1.82권(4.0% 증가), 2016년에는 1.91권(4.9% 증가), 2017년 2.03권(6.1% 증가)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설립 도서관 수가 많은 반면, 도서관 1관당 장서 수에 있어서는 교육청 도서관이 145,638권으로 가장 많으며, 지방자치단체 설립 도서관이 89,265권으로, 교육청 도서관과 장서수가 상당 부분 차이나고 있다.

○ 반면 사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수뿐만 아니라 소장장서 수에 있어서도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력 현황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규 인력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8,24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에는 7,382명에서 7,630명으로 3.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로도 2014년 7,845명, 2015년 7,885명 등 각각 2.8%와 0.5%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아울러 2016년 8,136명에서 2017년 8,248명으로 각각 3.2%,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최근 5년동안의 공공도서관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2.0%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이러한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높은 반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교육청 도서관의 경우 2012년 3,386명, 2013년 3,361명으로 -0.7%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3,180명으로 2014년 3,388 대비 -6.1%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도서관의 경우 연평균 -2.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직원 수

(: 명, %)

| | 2013년 | 2014년 | 증감률 | 2015년 | 증감률 | 2016년 | 증감률 | 2017년 | 증감률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 | | | |
| 전체 | 7,630 | 7,845 | 2.8 | 7,885 | 0.5 | 8,136 | 3.2 | 8,248 | 1.4 | 2.0 |
| 지자체 | 4,208 | 4,401 | 4.6 | 4,647 | 5.6 | 4,874 | 4.9 | 5,090 | 4.4 | 4.9 |
| 직영 | 3,089 | 3,211 | 3.9 | 3,332 | 3.8 | 3,497 | 5.0 | 3,642 | 4.1 | 4.2 |
| 위탁 | 1,119 | 1,190 | 6.3 | 1,315 | 10.5 | 1,377 | 4.7 | 1,448 | 5.2 | 6.7 |
| 교육청 | 3,361 | 3,388 | 0.8 | 3,180 | -6.1 | 3,196 | 0.5 | 3,104 | -2.9 | -2.0 |
| 사립 | 61 | 56 | -8.2 | 58 | 3.6 | 66 | 13.8 | 54 | -18.2 | -3.0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2로부터 재인용

○ 이를 다시 1관 당 정규직원 수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모든 유형에서 -2.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중 직영하는 경우 정규직원수가 -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탁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0.1%의 증가율을 보였다.

○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 2016년 3.1명에서 2017년 2.7명으로 감소하여 증감률이 -12.9%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5년간 -4.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5년동안 그 추이를 보면 불규칙적으로 증감을 반복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 직원 수

(: 명,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 | |
| 전체 | 8.8 | 8.4 | -4.5 | 8.1 | -3.6 | 8.1 | 0.0 | 7.9 | -2.3 | -2.6 |
| 지자체 | 6.9 | 6.5 | -5.8 | 6.4 | -1.5 | 6.4 | 0.0 | 6.4 | 0.5 | -1.7 |
| 직영 | 6.8 | 6.4 | -5.9 | 6.2 | -3.1 | 6.2 | 0.0 | 6.2 | 0.2 | -2.2 |
| 위탁 | 7.1 | 6.8 | -4.2 | 7.1 | 4.4 | 7.2 | 1.4 | 7.1 | -1.9 | -0.1 |
| 교육청 | 14.5 | 14.6 | 0.7 | 13.7 | -6.2 | 13.8 | 0.7 | 13.4 | -2.6 | -1.9 |
| 사립 | 3.2 | 2.9 | -9.4 | 2.8 | -3.4 | 3.1 | 10.7 | 2.7 | -12.9 | -4.2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3로부터 재인용

○ 정규 사서직원 수를 보면, 2013년 3,673명에서 2014년 3,821명으로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2015년에도 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각 설립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립 공공도서관의 정규 사서직원 수의 증가율이 높았으나, 2017년에 사립 공공도서관의 정규 사서직

원 수의 증감률이 -10.3%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7.1%, 9.0%, 5.5%, 7.6% 등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4년에 10.3%, 3.1%, 18.2%, -10.3% 등 최근 5년 동안 증감률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사서 직원 수 증감률

(: 명, %)

| | 2013년 | 2014년 | 증감률 | 2015년 | 증감률 | 2016년 | 증감률 | 2017년 | 증감률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 | | | |
| 전체 | 3,673 | 3,821 | 4.0 | 4,073 | 6.6 | 4,277 | 5.0 | 4,461 | 4.3 | 5.0 |
| 지자체 | 2,086 | 2,234 | 7.1 | 2,435 | 9.0 | 2,570 | 5.5 | 2,765 | 7.6 | 7.3 |
| 교육청 | 1,558 | 1,555 | -0.2 | 1,605 | 3.2 | 1,668 | 3.9 | 1,661 | -0.4 | 1.6 |
| 사립 | 29 | 32 | 10.3 | 33 | 3.1 | 39 | 18.2 | 35 | -10.3 | 4.8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4로부터 재인용

○ 설립 주체별로 각 도서관 1관당 정규사서 직원 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각각 4.7%의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0.7%, 1.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8>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 사서 직원 수

(: 명,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 | |
| 전체 | 4.2 | 4.1 | -2.4 | 4.2 | 2.4 | 4.2 | 0.0 | 4.3 | 2.4 | 0.6 |
| 지자체 | 3.4 | 3.3 | -2.9 | 3.4 | 3.0 | 3.4 | 0.0 | 3.5 | 2.9 | 0.7 |
| 교육청 | 6.7 | 6.7 | 0.0 | 6.9 | 3.0 | 7.2 | 4.3 | 7.2 | 0.0 | 1.8 |
| 사립 | 1.5 | 1.7 | 13.3 | 1.6 | -5.9 | 1.9 | 18.8 | 1.8 | -5.3 | 4.7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5로부터 재인용

○ 인력 중 비정규 인력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7,309명으로 2016년 7,056명 대비 3.6% 증가하였다. 이를 설립 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5,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평균증가율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2013년 4,196명에서 2017년 5,985명으로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비정규 직원 수

(단위: 명,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 | |
| 전체 | 5,431 | 6,091 | 12.2 | 6,526 | 7.1 | 7,056 | 8.1 | 7,309 | 3.6 | 7.7 |
| 지자체 | 4,196 | 4,795 | 14.3 | 5,236 | 9.2 | 5,710 | 9.1 | 5,985 | 4.8 | 9.3 |
| 교육청 | 1,205 | 1,255 | 4.1 | 1,258 | 0.2 | 1,311 | 4.2 | 1,278 | -2.5 | 1.5 |
| 사립 | 30 | 41 | 36.7 | 32 | -22.0 | 35 | 9.4 | 46 | 31.4 | 11.3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6로부터 재인용

○ 설립주체별로 1관 당 비정규 직원 수를 살펴보면, 교육청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연평균 증가율이 2.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직원 수

(: 명,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 | |
| 전체 | 6.3 | 6.5 | 3.2 | 6.7 | 3.1 | 7.0 | 4.5 | 7.0 | 0.0 | 2.7 |
| 지자체 | 6.8 | 7.1 | 4.4 | 7.2 | 1.4 | 7.5 | 4.2 | 7.6 | 1.3 | 2.8 |
| 교육청 | 5.2 | 5.4 | 3.8 | 5.4 | 0.0 | 5.7 | 5.6 | 5.5 | -3.5 | 1.4 |
| 사립 | 1.6 | 2.2 | 37.5 | 1.5 | -31.8 | 1.7 | 13.3 | 2.3 | 35.3 | 9.5 |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7로부터 재인용

4) 재정현황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재정현황(결산액)을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 2013년에 744,953백만원에서 2014년 732,512백만원, 2015년 825,093백만원, 2016년 908,448백만원, 2017년 995,584백만원 등이다. 특히 이러한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공도서관이 더 높아 7.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총 결산액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 | |
| 전체 | 744,953 | 732,512 | -1.7 | 825,093 | 12.6 | 908,448 | 10.1 | 995,584 | 9.6 | 7.5 |
| 지자체 | 517,109 | 477,734 | -7.6 | 555,506 | 16.3 | 626,970 | 12.9 | 698,915 | 11.5 | 7.8 |
| 교육청 | 224,600 | 251,532 | 12.0 | 266,239 | 5.8 | 277,927 | 4.4 | 293,423 | 5.6 | 6.9 |
| 사립 | 3,243 | 3,247 | 0.1 | 3,348 | 3.1 | 3,550 | 6.0 | 3,244 | -8.6 | 0.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17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22로부터 재인용

○ 이러한 연평균 증가율과 총결산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많으나, 1관당 총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2017년 1,270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883백만원, 사립 공공도서관은 162백만원인 것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1) 현황

(1) 설치 현황

○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수는 2013년 123관, 2014년 132관, 2015년 146관, 2016년 147관, 2017년 172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서 2015년에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 2017년 기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2관,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138개관, 장애인도서관 11, 작은도서관 925개관을 합하면,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총수는 1,633개관으로 나타난다.

< 12> 연도별 도서관수 추이

| 연도 | 도서관수 |
|------|-------------------|
| 2011 | 109 |
| 2012 | 116 |
| 2013 | 123 |
| 2014 | 132 |
| 2015 | 146 |
| 2016 | 147 |
| 2017 | 172 ⁴⁾ |

: 서울특별시데이터광장(2018), <서울시 도서관 현황통계>로부터 재인용
<http://data.seoul.go.kr/together/statbook/statbookList.do#submenu1>

○ 설립의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이 132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2관, 사립 공공도서관이 6관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공공도서관 분포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작은도서관은 제외한 숫자이다.

○ 지역별로는 강남구 및 송파구가 각각 11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의 2개관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각 지역별 도서관 및 좌석 수

| | 도서관 수 | 좌석수 |
|-----|-------------|----------------|
| 종 로 | 6 | 2 678 |
| 중 구 | 5 | 834 |
| 용 산 | 3 | 2 025 |
| 성 동 | 6 | 1 758 |
| 광 진 | 4 | 1 346 |
| 동대문 | 4 | 1 156 |
| 중 량 | 3 | 978 |
| 성 북 | 8 | 1 280 |
| 강 북 | 6 | 1 273 |
| 도 봉 | 7 | 1 925 |
| 노 원 | 6 | 2 644 |
| 은 평 | 6 | 2 252 |
| 서대문 | 4 | 964 |
| 마 포 | 4 | 1 606 |
| 양 천 | 6 | 2 223 |
| 강 서 | 9 | 2 908 |
| 구 로 | 10 | 2 347 |
| 금 천 | 4 | 1 376 |
| 영등포 | 5 | 1 102 |
| 동 작 | 5 | 1 079 |
| 관 악 | 5 | 1 043 |
| 서 초 | 2 | 495 |
| 강 남 | 11 | 2 466 |
| 송 파 | 11 | 2 435 |
| 강 동 | 7 | 2 733 |
| | 147관 | 42,926개 |

: 서울특별시데이터광장(2018), <서울시 도서관 현황통계>로부터 재인용
<http://data.seoul.go.kr/together/statbook/statbookList.do#submenu1>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수를 보면, 도서 및 비도서와 연속 간행물

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소장 추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 수는 도서가 가장 많으며, 연도별 추이에서도 도서는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오히려 비도서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속간행물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4> 서울 공공도서관 장서 수 연도별 추이

| | 자료 수 | | |
|------|----------|---------|--------|
| | 도서 | 비도서 | 연속간행물 |
| 2011 | 8910508 | 404 998 | 23 447 |
| 2012 | 9754776 | 437 061 | 24 276 |
| 2013 | 10693144 | 430 180 | 24 956 |
| 2014 | 11213319 | 655 378 | 24 833 |
| 2015 | 11929816 | 498 842 | 24 967 |
| 2016 | 12583120 | 515 455 | 24 633 |

: 서울특별시데이터광장(2018), <서울시 도서관 현황통계>로부터 재인용

○ 서울시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수 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가장 많은 1,133,386권의 도서와 48,556점의 비도서, 그리고 2,345종의 연속간행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유 현황은 교육청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15> 서울 공공도서관 지역별 장서 수 현황

| 지역 | 장서 수 | | |
|-----|----------|--------|-------|
| | 도서 | 비도서 | 연속간행물 |
| 종 로 | 1133 386 | 48 556 | 2 345 |
| 중 구 | 497 625 | 20 947 | 681 |
| 용 산 | 811 235 | 32 874 | 1 501 |
| 성 동 | 461 535 | 22 872 | 523 |
| 광 진 | 315 354 | 8 537 | 467 |
| 동대문 | 405 544 | 22 058 | 1 303 |
| 중 랑 | 334 230 | 15 024 | 331 |

| | | | |
|-----|---------|--------|-------|
| 북 | 546 284 | 25 960 | 775 |
| 강 북 | 375 941 | 11 153 | 280 |
| 도 봉 | 560 280 | 27 056 | 1 113 |
| 노 원 | 650 298 | 28 355 | 712 |
| 은 평 | 405 494 | 24 478 | 1 127 |
| 서대문 | 414 334 | 15 389 | 1 083 |
| 마 포 | 453 291 | 27 681 | 1 084 |
| 양 천 | 419 634 | 20 749 | 936 |
| 강 서 | 558 948 | 18 713 | 1 021 |
| 구 로 | 662 333 | 24 652 | 1 409 |
| 금 천 | 281 786 | 12 135 | 380 |
| 영등포 | 393 897 | 20 314 | 805 |
| 동 작 | 291 265 | 9 911 | 668 |
| 관 약 | 362 261 | 8 619 | 1 157 |
| 서 초 | 152 824 | 4 624 | 154 |
| 강 남 | 743 333 | 27 853 | 1 578 |
| 송 파 | 555 884 | 14 506 | 1 463 |
| 강 동 | 796 124 | 22 439 | 1 737 |

: 서울특별시데이터광장(2018), <서울시 도서관 현황통계>로부터 재인용

○ 각 연도별 공공도서관 방문자수와 자료실 이용자수를 비교해 보면, 2011년에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57,095,987명, 자료실 이용자 수는 42,552,573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공공도서관 방문자수가 68,247,78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자료실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2012년 다소 감소였으나 2013년 47,072,804명으로 대폭 증가한 후 다시 2014년 42,580,05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48,719,001명으로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 도서관 방문 및 자료실 이용자 수는 교육청 공공도서관보다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이용 빈도가 높으며, 연간 대출책 수 역시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2배 가까이 대출수가 높다.

<표 16> 서울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연간 대출책 수

| | 도서관 방문자수(명) | 자료실 이용자수(명) | 연간대출 책수(권) |
|-----------|----------------|----------------|---------------|
| 서울시 공공도서관 | 44234876 | 34868643 | 15116634 |
| 교육청 공공도서관 | 23678470 | 15740712 | 7834437 |
| 사립 공공도서관 | 334 434 | 88 985 | 82 429 |
| 총 로 | 4045535 | 2435183 | 1283236 |
| 중 구 | 1841506 | 1564551 | 560 369 |
| 용 산 | 2102081 | 1406843 | 580 552 |
| 성 동 | 3148777 | 2788954 | 824 017 |
| 광 진 | 2231116 | 2054007 | 1541369 |
| 동대문 | 2081213 | 1598529 | 635 453 |
| 중 량 | 2761196 | 1996336 | 599 078 |
| 성 북 | 1962333 | 1768908 | 770 356 |
| 강 북 | 2759150 | 1921542 | 579 653 |
| 도 봉 | 1581417 | 975 878 | 743 503 |
| 노 원 | 4215831 | 2670598 | 1490640 |
| 은 평 | 2930655 | 2314131 | 895 480 |
| 서대문 | 1641299 | 1075726 | 589 711 |
| 마 포 | 3521345 | 2474788 | 943 096 |
| 양 천 | 3368802 | 2329510 | 1018823 |
| 강 서 | 2715999 | 2024546 | 1207917 |
| 구 로 | 2772863 | 2219183 | 887 798 |
| 금 천 | 2260050 | 1738754 | 338 660 |
| 영등포 | 2124109 | 1419996 | 528 419 |
| 동 작 | 1463687 | 1228510 | 860 693 |
| 관 악 | 1177850 | 755 060 | 568 267 |
| 서 초 | 1358597 | 960 012 | 474 438 |
| 강 남 | 5399365 | 3749750 | 1467180 |
| 송 파 | 4188791 | 3319148 | 1752568 |
| 강 동 | 4594213 | 3907897 | 1892224 |

: 서울특별시데이터광장(2018), <서울시 도서관 현황통계>로부터 재인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는 2011년 1,567명에서 2016년기준 2,28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직원수보다 여자 직원 수의 증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2011년 남자 직원 수는 519명, 2016년 663명이었으나, 여자 직원 수는 2011년 1,048명에 2016년 1,61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7> 서울 공공도서관 남녀 직원 수의 추이

| | 직원 수 | | |
|------|-------|-----|-------|
| | 소계 | 남 | 여 |
| 2011 | 1 567 | 519 | 1 048 |
| 2012 | 1 866 | 620 | 1 246 |
| 2013 | 1 804 | 521 | 1 283 |
| 2014 | 1 596 | 551 | 1 045 |
| 2015 | 2 192 | 675 | 1 517 |
| 2016 | 2 281 | 663 | 1 618 |

: 서울특별시데이터광장(2018), <서울시 도서관 현황통계>로부터 재인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예산추이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큰 예산의 증가가 없었으나, 2015년부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서울 공공도서관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천원)



○ 각 지역별 예산 규모를 보면, 특히, 종로구가 가장 많은 102억, 노원구 84.6억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5개 구의 평균예산은 5,203,309천원이다.⁵⁾

<표 18> 서울 공공도서관 지역별 예산 현황

(단위:천원)

| | 예산 |
|-----|------------|
| 총 로 | 10,297,051 |
| 중 구 | 5,811,810 |
| 용 산 | 6,791,241 |
| 성 동 | 6,428,536 |
| 광 진 | 3,144,602 |
| 동대문 | 5,175,085 |
| 중 랑 | 2,449,784 |
| 성 북 | 2,897,270 |
| 강 북 | 2,924,076 |
| 도 봉 | 5,170,971 |
| 노 원 | 8,466,405 |
| 은 평 | 6,305,848 |

5)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때 설립주체별로 지자체(직영, 위탁), 교육청, 사립을 포함한 통계를 잡고 있는바, 여기서 공공도서관 예산이라 함은 이들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
|-----|-----------|
| | 4,058,179 |
| 마 포 | 6,544,204 |
| 양 천 | 4,218,705 |
| 강 서 | 6,225,235 |
| 구 로 | 5,871,181 |
| 금 천 | 2,279,744 |
| 영등포 | 5,756,804 |
| 동 작 | 3,451,827 |
| 관 악 | 3,554,368 |
| 서 초 | 1,633,670 |
| 강 남 | 6,403,719 |
| 송 파 | 7,236,922 |
| 강 동 | 6,985,512 |

(2) 타 광역단체와 비교에서 서비스 제공 현황

○ 서울시의 공공도서관을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면적이나 장서, 예산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 이용자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독서동아리의 수는 상위에 속하고 있다.

〈표 19〉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타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1관당)

| 지표 | 면적/ 인구(1 천명) | 서비스 인구(명) | 장서(권) | 인력(명) | 예산 (백만 원) | 이용자 (천명) | 대출책 (권) | 프로그 램참여 (명) | 독서동 아리(개) |
|----------|--------------------|------------------|------------|-----------|-----------------|-------------|------------|-------------------|------------------|
| 전국평 균 | 50.4 | 51,21 4 | 97,84 5 | 8 | 900 | 279 | 2.42 | 291,9 37 | 213 |
| 서울 | 30.9 | 66,70 4 | 85,59 9 | 10 | 850 | 464 | 2.35 | 1,058, 006 | 1,035 |
| 순위 | 15 | 5 | 12 | 2 | 9 | 1 | 5 | 2 | 1 |

2) 평가

(1) 타 광역단체에 비해 양호한 이용환경

○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환경은 앞의 표에서 보듯이 높은 편이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 주체에 의한 공공도서관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환경이 타 시도에 비하여 양호한 상태이다.

(2) 2017년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 2017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75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가 72.2점을 차지하였다.

- 이에 비하여 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67.2점,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는 69.4점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소장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와 최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와 점진개선항목으로 선정되었다.

(3) 전문가 및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수요 반영

○ 전문가와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지향하여야 할 ‘도서관정책 방향’은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는 글로벌 사회환경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나타났다.

-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10회에 걸쳐 도서관 전문가를 모셔 실시한 전문가 강의와 2017. 11. 25.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전체 참가자 591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20〉 전문가 및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관정책 방향

| 구분 | 요약된 의견 |
|-----|---|
|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좋은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도서관 운영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추진 |
|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지식수도 서울에 걸맞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환경의 개선 ▶ 서울 시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만족도 및 기대편익의 극대화 |

3) 행정서비스 제공상 문제점

(1)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 구조의 한계

○ 현재 서울시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서울시 직속의 서울도서관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 25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3원화⁶⁾되어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 모형이 부재한 실정이다.

-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 및 집행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확립이 안 된 상태이다.

- 서울특별시 「책 읽는 서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2. 10.에는 서울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식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소관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현 체계로서는 최적의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 특히,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의 공공도서관(교육청 공공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일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 모형을 형성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 서울도서관·교육청 공공도서관·자치구 공공도서관의 분절적, 중복적 기능

-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상 “조직·기구” 7)를 통해 본 도서관의 기능을 보

6) 내에 일부 민간도서관이 존재하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면, 3개의 조직(행정지원과, 도서관 정책과, 정보서비스과)이 수행하는 사무를 통해 서울도서관의 주요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 서울도서관의 주요 기능

| 행정지원과 | 도서관 정책과 | 정보서비스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사, 회계 등 도서관 운영 총괄 -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 관리 - 지역도서관 건립 및 지원 협력 사업 개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 - 교육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대출·반납에 관한 사항 - 온라인 참고서비스 운영 - 이용자 봉사업무에 대한 사항 등 |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2개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정독도서관 홈페이지상 “조직 및 담당업무”⁸⁾을 통해 교육청도서관의 주요 기능⁹⁾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정보자료과, 독서문화진흥과 3개 과로 조직이 구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2〉 교육청소속 정독도서관의 주요 기능

| 행정지원과 | 정보자료과 | 독서문화진흥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교육/인사/보안/시설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자료조직/도서관 협력/정보제공/독서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문화활동/독서진흥/도서관 홍보/단체대출 |

-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25개 서울소재 자치구 중에서 광진구, 서대문구

7) <http://lib.seoul.go.kr/rwww/html/ko/organization.jsp>.

8) http://jdlib.sen.go.kr/jdlib/module/taskManage/index.do?menu_idx=35.

9) 과별 업무가 많이 나열되어 있으나 모든 업무를 다 언급할 수 없어 홈페이지상 표기된 바에만 따른다.

등의 경우는 자치구 내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는 중앙관과 분관 체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노원구와 성북구 등은 재단에 도서관본부를 설치하여 일사분란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자치구내에서도 운영 주체가 달라 개별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이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경우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강남구 내에서 대표도서관으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그 홈페이지¹⁰⁾상 주요 기능을 살펴기 위한 조직 및 업무가 명료하지 않다.

- 다만, 자치구 공공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나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과는 확연히 달리 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자료 및 정보제공에 관한 일반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나라서비스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기본적 사항은 서울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과 규모에서는 상이하나 내용상으로 유사한다.

○ 서울도서관·교육청도서관·자치구도서관 간 유사기능과 상이한(독자적) 기능

- 위에서 살펴본 각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 간 유사기능과 상이한(독자적) 기능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서울시 공공도서관 주요 기능 비교

| 기능 | 서울도서관 | 정독도서관 | 도곡정보문화도서관 |
|------|--|--------------------------|---------------------------|
| 공통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사, 회계 등 도서관 운영 행정사항, 위원회 운영 등 - 온라인 참고서비스 운영 - 이용자 봉사업무(일반적 자료·정보제공, 상호대차·장애인서비스) 등 | | |
| 고유기능 | - 지역도서관 건립 및 지원협력 사업 | -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도서목록제공 등 평생 | - 이용자 봉사업무(일반적 자료·정보제공, 상 |

10) <http://dogoklib.gangnam.go.kr/>.

| | | | |
|--|---------------------------|-----------------------|---------------|
| | - 교육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사무 등 | 호대차·장애인서비스) 등 |
|--|---------------------------|-----------------------|---------------|

(2) 서울시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 제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상호 별도의 주체에 의해 괴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 공공도서관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20년에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종로도서관”이 설치되고, 1922년에는 남산도서관이 교육청에 의해 설립이 된 것이다.

-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인 1995년 이후 2000년부터 일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장에 의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 시작¹¹⁾하면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더 괴리적인 발전을 경주하게 된다.

- 이러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의 괴리된 서비스 제공 방식은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 선진국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수가 적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도서관 사각 지대가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이러한 서비스 사각지대와 대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서비스 협력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공공도서관 주체 및 구성원들의 가치관 및 지향점의 차이로 인해 개별 공공도서관들마다 적지 않은 인력 및 재정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11) 건립의 기초에는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존재한다.

하고 서울도서관을 정점으로 한 거버넌스(협치) 형성 수준은 거의 ‘Zero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 예로, 매년마다 서울시는 광역차원에서 “Book Festival“과 같은 행사를 실시하고, 교육청도서관과 자치구도서관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유사한 행사를 큰 차별성 없이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큰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재정투입, 중복업무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간의 서비스 제공이 제각각이다.

-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구조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상호대차와 같은 서비스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는 상호대차에 문제가 없으며, 1개의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도 문제는 없다.

- 문제는 교육청간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서울도서관과는 단절되어 있고, 1개 자치구내에서의 상호대차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25개 자치구 간에는 불통이고, 나아가 서울도서관과도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권 및 정보접근권 침해의 해소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3) 공공도서관 소유·관리·이용관계의 무질서와 협력 부재

○ 공공도서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자가 상이하여 일관된 행정재산의 관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고 정책의 실현과 서비스 제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2018년 현재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22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시립도서관 17개관, 시립평생학습관 5개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권은

정부 5개관, 서울시 6개관, 교육청 8개관, 자치구가 3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 행사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 현황은 정부 1개관, 서울시 5개관, 교육청 15개관, 자치구 1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 여기에 공공도서관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장, 교육감, 문화재청, 산림청, 구청장,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어 심각하게 복잡한 구조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4〉 교육청도서관 소유 및 관리 현황

| 연번 | 도서관명 | 소유 및 관리 현황 | | | |
|----|------------|------------|--------------|-----|-----------|
| | | 토지 | | 건물 | |
| |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 1 | 정독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 | 종로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교육감 |
| 3 | 남산도서관 | 정부 | 산림청 | 서울시 | 교육감 |
| 4 | 동대문도서관 | 동대문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5 | 어린이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6 | 용산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7 | 도봉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8 | 강남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9 | 강서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0 | 개포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서울시 | 교육감 |
| 11 | 강동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2 | 구로도서관 | 서울시 | 시장(도시개발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3 | 서대문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4 | 고척도서관 | 서울시 | 시장(아동청소년담당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5 | 양천도서관 | 서울시 | 시장(주택공급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6 | 등작도서관 | 정부 | 교육부 | 서울시 | 교육감 |
| 17 | 송파도서관 | 서울시 | 시장(주택공급과) | 송파구 | 구청장 |
| 18 | 마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9 | 노원평생학습관 | 노원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0 | 고덕평생학습관 | 강동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1 | 영등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2 | 마포평생학습아현분관 | 정부 | 교육부 | 정부 | 교육부 |

(4)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 간 거버넌스 부재

○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을 건설하거나 건설 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도서관이 계획한 정책을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펼치기에는 법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마련한 경우 정부와 서울시는 국비와 서울시비를 통하여 그 설립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설치 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는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재정적 지원은 존재하나 서울도서관이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상이한 서비스제공 방식 고수에 따른 시민 불편

○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차원에서는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적인 전달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한다는 이유로 민간에 의한 전달체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각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문화정보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인프라, 합리적인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확대되어야 하나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은 지방공기업, 문화재단, 종교시설 등 다양한 운영주체에게 위탁되어 운영됨으로써 공공도서관 간 협력이 부족할 뿐더러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서에 의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나 재정적 편익만을 고려함으로써 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수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과 이해관계 구도

제1절 서울시 행정수행 체계

제2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기형구조

제3절 관계자 입장

제1절 서울시 행정수행 체계

1. 교육제도와 지방자치

○ 제도적 보장의 장치

-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면서 이를 개인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위치지우고 있다.
- 동시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교육제도를 가족제도, 민주적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 더불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써 개별 법률을 통해서도 그 자체를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이원화

○ 양 제도 간 조화적 관계의 부족

- 교육제도와 자치제도가 국가운영 및 행정수행 상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제도임에도 불가하고 교육제도와 자치제도 간에는 일정한 부조화 현상이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함으로서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표 25> 서울시 행정수행 체계

| | |
|--------|--------|
| 광역일반행정 | 광역교육행정 |
| 기초일반행정 | |

-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1991. 3. 8. 제정(동년 6. 20. 시행)하였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위에서 일반행정의 수장인 시장 및 도지사에 대비되는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도록 하여 기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하였다.

- 대체적으로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들면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나 광역단위의 일반행정사무에는 교육적 사무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양자간에는 명확한 배분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유사중첩적인 사무도 존재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행정사무를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고, 일반행정 차원에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헌법 및 법률 차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 상호조화적 관계의 모색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면 할수록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교집합지점에서의 갈등은 첨예하게 발생된다.

- 과거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일반행정에서는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교육행정에서는 학교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로서의 급식의 중요성 차원에서 갈등이 존재하였다.

-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던 바, 가령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간 러닝메이트 방식이 제기되었으나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 이런 갈등관계의 현장에 공공도서관 문제가 존재하는 바, 교육행정과 일

반행정의 갈등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헌법 차원에서 교육제도에 관한 제31조 제4항과 지방자치제도의 동법 제117조, 제118조 간을 조화롭게 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런 조화적 관계의 모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제2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구조

1. 서울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

○ 27~8년전 문교부의 교육부와 문화부로 이원화 간재 존속

<표 26> 서울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 | | |
|-----------------------------------|---|---|
| 서울도서관 · 문화본부 · 1개관, 사서 50여명 | 자치구도서관 · 문화,교육,행정,복지 등에서 담당 · 144개관(예정) | 교육청도서관 · 직속기관+평생교육과 · 22개관, 사서 약425명 ¹²⁾ |
|-----------------------------------|---|---|

○ 이원구조와 별도로 재정지원은 유지

- 이러한 이원화 구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매년하고 있다.

<표 27> 5년간 자치구/교육청 도서관 지원 및 '18년도 예상 지원내역(단위:백만원)

| 연 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예정) |
|------------|------------|-------|-------|-------|-------|-------|-----------|
| 자치구 도서관 | 도서관 수 | 91 | 102 | 112 | 115 | 125 | 144 |
| | 지원예산 | 4,500 | 4,391 | 4,992 | 5,432 | 6,869 | 5,866 |
| | 1관 평균 지원예산 | 49 | 43 | 44 | 47 | 56 | 40 |
| 교육청 도서관 | 도서관 수 | 22 | 22 | 22 | 22 | 22 | 22 |
| | 지원예산 | 4,177 | 4,177 | 4,177 | 4,677 | 4,177 | 1,250 |

12) 5 30명, 5급 교육행정 또는 사서 6명, 6급사서 131명, 7급사서 172명, 8급사서 86명.

| | | | | | | | |
|--|------------|-----|-----|-----|-----|-----|----|
| | 1관 평균 지원예산 | 189 | 189 | 189 | 212 | 189 | 57 |
|--|------------|-----|-----|-----|-----|-----|----|

- 2018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액은 5,866,000천원으로 1관당 50,736천원이 지원되었다.

- 반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액은 4,177,000천원으로 1관당 189,86318천원이 지원되었다.

- 이러한 재원의 지원 근거는 우선 「도서관법」 제29조와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6조가 있으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명료한 지원의무 규정으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즉 이들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도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 존재

-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자치구 소속 공공 도서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더 많은 실정이다.

<표 28> 교육청과 자치구도서관 지원예산 비교 (단위:천원)

| 연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예정) |
|------------|--------------|-------|-------|-------|-------|-------|----------|
| 자치구 도서관 | 도서관수 | 102 | 112 | 115 | 123 | 125 | 136 |
| | 지원예산 | 4,391 | 4,993 | 5,433 | 5,724 | 6,869 | 6,866 |
| | 1관평균 지원예산 | 43 | 45 | 47 | 47 | 55 | 50 |
| 교육청 도서관 | 도서관수 | 22 | 22 | 22 | 22 | 22 | 22 |
| | 지원예산 | 4,177 | 4,177 | 4,177 | 4,677 | 4,177 | 4,177 |
| | 1관평균 지원예산 | 190 | 190 | 190 | 213 | 190 | 190 |

〈표 29〉 유사규모의 교육청도서관 및 자치구도서관 서울시 운영지원금 예산
비교(단위:천원)

| 교육청도서관 | | | 자치구도서관 | | |
|--------------------------------|--------|---------|------------------|--------|---------|
| 도서관명 | 면적(m2) | 지원액 | 도서관명 | 면적(m2) | 지원액 |
| 강남도서관 | 1,631 | 150,275 | 강북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 1,696 | 46,969 |
| 강동도서관 | 3,082 | 151,850 |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 3,094 | 99,961 |
| 강서도서관 | 4,024 | 211,850 | 반포도서관 | 3,593 | 106,019 |
| 개포도서관 | 2,377 | 184,340 | 등빛도서관 | 2,282 | 83,061 |
| 고덕평생학 습관 | 3,854 | 164,150 | 가양도서관 | 3,014 | 77,506 |
| 고척도서관 | 5,438 | 186,540 | 종량구립정보 도서관 | 5,106 | 131,798 |
| 구로도서관 | 2,538 | 152,700 | 중곡문화체육 센터도서관 | 2,032 | 81,194 |
| 남산도서관 | 9,410 | 278,250 | 비교대상없음 | - | - |
| 노원평생학 습관 | 4,223 | 190,635 | 성동자치구 도서관 | 5,692 | 123,379 |
| 도봉도서관 | 2,743 | 179,470 | 도곡문화정보 도서관 | 2,930 | 76,885 |
| 동대문도서 관 | 4,352 | 158,600 | 관악문화관 도서관 | 4,802 | 163,998 |
| 동작도서관 | 1,974 | 184,650 | 금천구립 시흥도서관 | 2,190 | 89,207 |
| 마포평생 학습관 (아 현 분 관 포함) | 11,524 | 314,820 | 비교대상없음 | - | - |
| 서대문도서 관 | 3,763 | 161,530 |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 3,142 | 96,575 |
| 송파도서관 | 8,260 | 230,870 | 은평자치구도서 관 | 8,013 | 130,299 |
| 양천도서관 | 6,864 | 226,780 | 광진정보도서관 | 7,283 | 136,682 |
| 어린이도서 관 | 3,797 | 205,350 | 송파글마루도서 관 | 3,697 | 100,422 |
| 영등포평생 학습관 | 6,804 | 161,740 | 노원정보도서관 | 6,526 | 143,149 |
| 용산도서관 | 6,946 | 184,860 | 성북정보도서관 | 6,667 | 114,150 |
| 정독도서관 | 13,266 | 290,390 | 비교대상없음 | - | - |
| 종로도서관 | 3,553 | 207,350 | 도봉문화정보 도서관 | 3,216 | 107,648 |

- 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의 부족: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에 전체 예산의 30%까지 재정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
- 자료구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보조율은 낮으나 자료구입비의 경우 서울시 예산 보조율이 70~99%로 자료구입비에 대한 서울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30> 최근 5년 간 교육청도서관 보조금(자료구입비, 운영비) 예산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 보조율

| | 교육청 자료구입비 대비 서울시 자료구입비 보조율 | 교육청 운영비 대비 서울시 운영비 보조율 |
|------|-------------------------------|---------------------------|
| 2013 | 70.2% | 6.8% |
| 2014 | 80.3% | 5.7% |
| 2015 | 81.9% | 5.2% |
| 2016 | 89.2% | 5.2% |
| 2017 | 99.3% | 3.1% |

- 및 정책집행의 어려움 존재: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보조금 합동점검 대상에는 교육청도서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협력 및 정책집행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 협력과 평가과정 없이 예산지원에 치중된 구조적 문제 존재: 교육청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강제하기에 앞서 서울시와 교육청도서관 간의 협력관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히 서울시가 자치구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보조금 지원의 중복 문제: 보조금 지원을 강제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교육청도서관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조례상 전출금과의 중복여부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령, 평생교육정책관의 「공공도서관 혁신 운영 사업」으로 교육청도서관 22개관에 조례상 전출금 7억 원 지원이 중복지원이 아닌지 검토가 요구된다.

2.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대비 협력적 관계 유지

- 서울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의 관계가 상호 분절적이라면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현행 법제도적 현실에는 서울도서관의 도서관정책 등을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전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충분한 재정지원에 반해 행정적 관여는 반대

-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외딴섬으로 존재하는 제도적 상황을 이용해 재정적 지원은 환영하나 행정적 관여는 반대하는 상태이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일원화가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 공공도서관 행정은 기본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후원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이고, 광역보다는 기초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 Principle)가 지켜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위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단체의 도서관에게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 안정적 서비스제공체계 vs 서비스 제공상의 난이도 존재

- 서울시에 존재하는 22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그 설치 자체가 오래된 데다 서울시가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사서 등 인력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

라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양도서관 간 협력체계의 부재

- 거리상 근거리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비록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서관 간 시민을 위한 협력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3절 관계자 입장

1. 서울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 확보 및 공공도서관 일원화 희망
 -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2.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 서울도서관과의 대등하고 병렬적인 체계 유지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도서관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3.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관여의 강화는 반대
 - 교육청도서관과의 일원화를 넘어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강화가 행·재정상의 다양한 관여로 나타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제4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세부내용과 단계
- 제3절 갈등관리 방안
- 제4절 법제도적 실행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 확보

○ 현행 실정법이 서울도서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조직적 측면)

- 「도서관법」 제22조 이하와 조화되는 기능과 일본의 공공도서관 체계¹³⁾에서 본 바와 같은 체계적이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서울 전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령 ‘서울시 광역-기초 도서관시스템 구조’가 필요하다.

- ‘광역-기초 도서관시스템 구조’는 첫째, 광역 도서관시스템(서울도서관과 권역별 광역 분관으로 구성)과 둘째, 기초 도서관시스템(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을 중앙도서관, 분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구성)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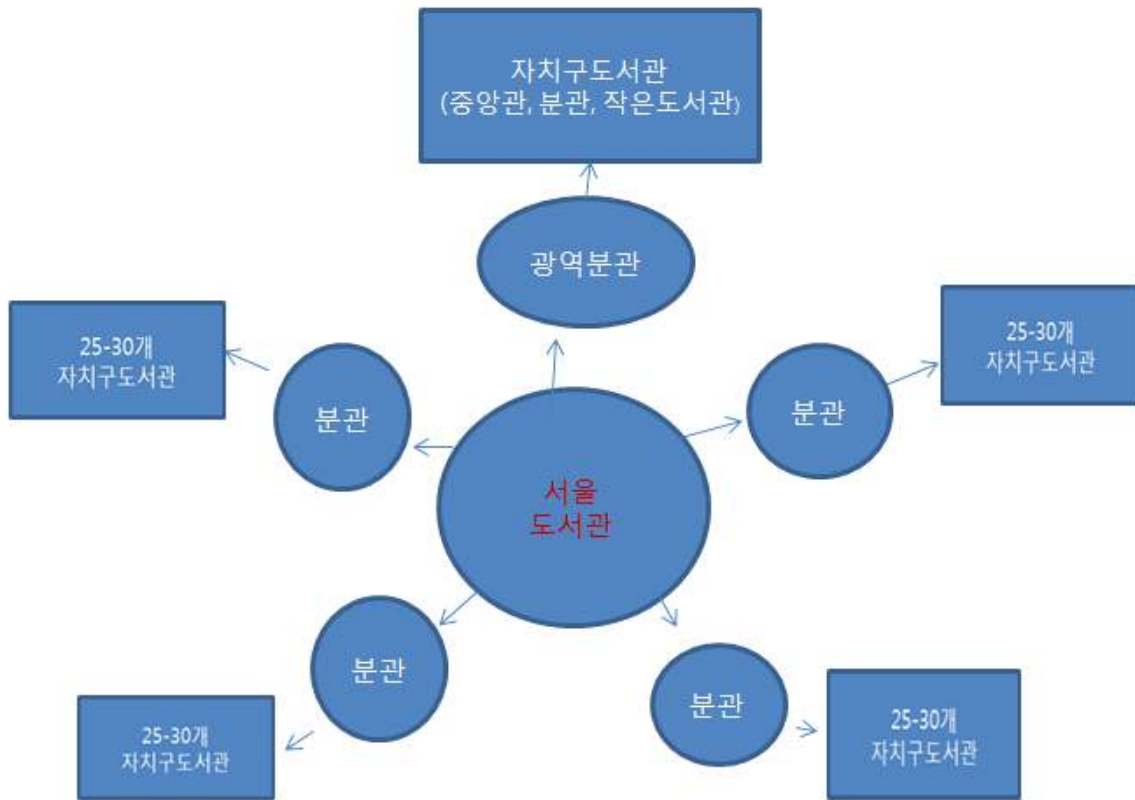
<표 31> 서울시 광역-기초 도서관시스템 구조

| | |
|-----------|--------------------|
| 도서관시스템 | 서울도서관 + 광역 분관(권역별) |
| 기초 도서관시스템 | 중앙관 + 분관 + 작은도서관 |

- 이상을 정리하여 모델로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0> 과 같다.

13) 【부록 1】 참조.

<그림 2> 지역대표도서관 기능확보 모델



○ 조직적 개편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공공도서관별 기능을 구분하여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기능적 측면)

-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체계를 광역과 기초 도서관시스템으로 구축할 때, 각 공공도서관별 기능을 명료히 하는 것은 상호 협력작용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다. 각 도서관별 기능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도서관별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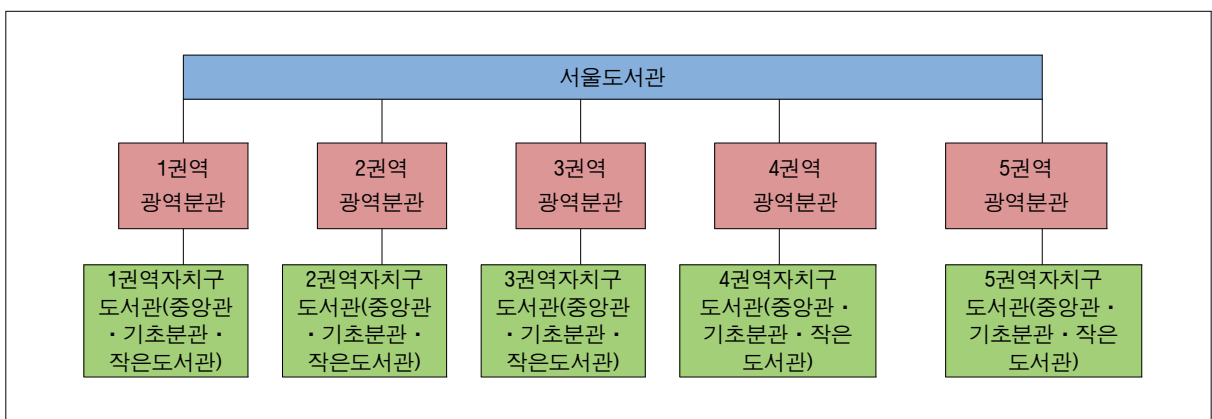
| 구 분 | | 성격 및 주요 역할 |
|-----|-------|---|
| 광역 | 서울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대표도서관 ▶ 광역도서관시스템 총괄 ▶ 서울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 서울시 지식문화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
| | 광역 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권역에 각1관 조성 ▶ 서울시 도서관 시책 실행 ▶ 권역별 공공도서관 중간 지원 |
| 기초 | 중앙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자치구에 각1개 중앙도서관 설치 ▶ 서울시 도서관 시책 추진을 위한 광역분관과의 연결고리 ▶ 기초 도서관시스템 총괄 |
| | 기초 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3만명당 1개 도서관 조성 ▶ 자치구 중앙관의 도서관 시책 실행기구 |
| | 작은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분관이 없는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2. 서비스전달체계의 일원화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도서관의 권역별 광역 분관으로 이관
 - 현재 22개 존재하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특별시의 광역 분관 도서관의 기능을 부여하여 이관한 후 서울도서관의 정책 등을 중간적으로 전달 및 시행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 별로 1개씩의 광역 분관을 조성하여 서울도서관의 시책을 실행하고, 자치구 도서관들을 중간적 지위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을 5개 권역별 분관 하에 설치
 - 현재 144개(2018년 개관 예정 포함)인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은 5개 권역별로 설치되는 광역 분관 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이때 서울도서관과 권역별 분관으로부터는 관여보다는 지원과 후원을 강화하여 받도록 하고,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한 보충성의 원리가 서울도서관과 권역별 분관 사이에, 또한 권역별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이에 적용되도록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3> 서비스전달체계 일원화 방안



제2절 세부내용과 단계

1. 서울도서관에 지역대표도서관 기능부여

1) 정책 가이드라인

○ 「도서관법」 제2조, 제22조, 제23조를 종합하여 보면 지역대표도서관은 일종의 ‘정책도서관’ 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서울도서관도 동법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에 설치되었으나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아 일종의 ‘외딴 섬’ 처럼 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런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바, 후술하는 ‘기반개선 과제’ 들이 해소되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서울도서관이 정책내용으로 삼을 대상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 공공도서관의 질적인 여건 확충
- 권역별 시립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
-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구립 및 작은도서관의 건립 및 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이용환경의 개선
-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 공공도서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정비
-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사항
- 장서개발정책 및 그에 관한 계획 수립
- 독서소외인에 대한 정책
-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 독서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정책
- 공공도서관을 위해 봉사할 인력의 확보 등

2) 인프라 가이드라인

○ 서울시를 5개의 권역, 즉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과 서울도서관을 연결하여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서울도서관 분관들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때 신규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라면, 교육청 소속이나 토지의 소유권과 관리자가 자치구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서울시이면서 교육감이 관리하는 3개 공공도서관(동대문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을 각각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3) 인력 가이드라인

○ 본 보고서에서 개선 및 제시되는 사안들을 집행하고 나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울도서관 조직의 개편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현행 서울도서관의 지위를 2급 내지 3급 사업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개의 부(정책부, 운영부), 5과, 권역별 5개 분관

○ 서울도서관이 자치구 및 서울시로 이관되는 현행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인력 및 전문가 배치 등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수립할 수 있는 기능

도 부여되어야 한다.

4)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 공공도서관이 일원화 될 때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 소속으로 일원화되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의 운영이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애 불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 이에 관한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서울도서관이 정책을 마련하고 개별 공공도서관이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자신의 지역 및 기능에 부합하는 서비스 모델을 찾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서울도서관은 또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직영 및 위탁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총괄기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 공공도서관 구조일원화

1) 개관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과의 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공공도서관과의 이원적인 구조 속에서는 “문화도시, 서울” 을 제대로 이루어 가는데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는 우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서울도서관이 서울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선진적이며 효율적으로 또 일관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일원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해소 방안으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소속으로 완전 일원화(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하는 방법, 둘째, 서울시

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교육청에 다시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 셋째, 서울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인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시장 소속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와 관리권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자 및 관리자가 여전히 상이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한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도서관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와 불안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을 대상으로 한 선진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2) 구조개선 1과제

(1) 개념

| |
|--|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자가 서울시장인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자를 서울시장 소속 1개 부서로 통일 |
|--|

○ 서울시에 존재하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에 대한 관리자가 상이한 경우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 가령, 용산도서관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로 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자도 시장(서울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형성 및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체계이다.

- 이에 반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 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자와 건물에 관한 재산관리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가령, 구로도서관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서울시이지만 토지는 시장 하에 도시개발과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하에 서울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 고척도서관, 양천도서관의 경우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이때 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서울시장 소속의 서울도서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추진방안 및 내용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자가 서울시장인 공공도서관의 토지 및 건물의 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통일적으로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

- 서울시장 소속의 서울도서관이 담당하며 추진은 1-2개월 내로 완료가 가능하고, 서울시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 34〉 추진방안

| 기간 | 수단 |
|------|----------------|
| 1-2월 | 서울시 업무분장 규정 개정 |

〈표 35〉 개선내용

| 연번 | 도서관명 | 소유 및 관리 현황 | | | |
|----|--------|------------|-----------|-----|-----------|
| | | 토지 | | 건물 | |
| |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 1 | 정독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 | 종로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교육감 |
| 3 | 남산도서관 | 정부 | 산림청 | 서울시 | 교육감 |
| 4 | 동대문도서관 | 동대문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5 | 어린이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6 | 용산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7 | 도봉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 | | | | |
|----|----------------|-----|------------------------------|-----|-----------|
| 8 | 강남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9 | 강서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0 | 개포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 11 | 강동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2 | 구로도서관 | 서울시 | 시장(도시활성화 과)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3 | 서대문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4 | 고척도서관 | 서울시 | 시장(청소년정책 과)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5 | 양천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6 | 동작도서관 | 정부 | 교육부 | 서울시 | 교육감 |
| 17 | 송파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시장(서울도서관) | 송파구 | 구청장 |
| 18 | 마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9 | 노원평생학습관 | 노원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0 | 고덕평생학습관 | 강동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1 | 영등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2 | 마포평생학습아현분 관 | 정부 | 교육부 | 정부 | 교육부 |

3) 구조개선 2과제

(1) 개념¹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이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관리자가 교육감인 경우: 재산관리자를 서울시로 이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이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관리자가

14) ‘ 일원화’의 중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인 공공도서관의 재산관리자를 서울시장 소속으로 이관하여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이 대상에 해당된다. 가령, 정독도서관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이고, 토지 및 건물의 재산관리자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다.

-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교육’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로 볼 것인가의 선행 고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의 대상은 ‘사람’을 본질적인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여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다.

- 이에 대해, 문화는 사람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매개체와 공간 등 인프라의 제공을 본질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교육과 문화의 중첩적인 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면, 공공도서관은 ‘문화’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와 다르지 않다.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장과 교육감 간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추진되기 어려운 과제에 해당한다.

- 정미연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스템 체계화 방안” (2013)¹⁵⁾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스템 체계화 모형(안)¹⁶⁾은 서울시 대표도서관(서울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 대표도서관이라는 이원체제의 유지를 “바람직한 모형(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바람직 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 정책의 실택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계속 가져가고 현실에 안주하자는 의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 이 대안은 ‘수동적이고 방어적 대안’임을 단 번에 알 수 있다. 서울시

15) 하계 학술발표회, 29-44면.

16) 위의 자료 42면.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하는 기능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그것과 세밀한 부분에 있어 전문화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초등학교에 대해 어린이 추천도서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이 일원화를 회피하는 근본적으로 이유는 일원화가 되었을 때 현재의 업무환경, 승진의 기회 등이 열악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 서울대표도서관이 서울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는 정책은 「도서관법」에 가장 부합되는 모형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고¹⁷⁾, 중앙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단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공공도서관 일원화를 추진한 바가 있으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의 반발로 수 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2) 추진방안 및 내용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서울시이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관리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공공도서관 이원화의 중심에 놓인 공공도서관의 ‘재산관리자’를 서울시로 일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장과 교육감 간에 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근무자들의 합의만 전제된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이다.

- 「도서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가능하다.

〈표 36〉 추진방안

| 기간 | 수단 |
|-----------------------|--------------|
| 서울시장과 교육감 간의 협의여부가 기준 |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 |

17) , 위의 자료 38면.

〈표 37〉 개선내용

| 연번 | 도서관명 | 소유 및 관리 현황 | | | |
|----|----------------|------------|----------------|-----|-------------|
| | | 토지 | | 건물 | |
| |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 1 | 정독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2 | 종로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교육감 |
| 3 | 남산도서관 | 정부 | 산림청 | 서울시 | 교육감 |
| 4 | 동대문도서관 | 동대문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5 | 어린이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6 | 용산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7 | 도봉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8 | 강남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9 | 강서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0 | 개포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1 | 강동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2 | 구로도서관 | 서울시 | 시장(도시활성화 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3 | 서대문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4 | 고척도서관 | 서울시 | 시장(청소년정책)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5 | 양천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6 | 등작도서관 | 정부 | 교육부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7 | 송파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송파구 | 구청장 |
| 18 | 마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9 | 노원평생학습관 | 노원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0 | 고덕평생학습관 | 강동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1 | 영등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22 | 마포평생학습아현분 관 | 정부 | 교육부 | 정부 | 교육부 |

4) 구조개선 3과제

(1) 개념

토지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정부(기관)이면서, 건물의 소유자가 서울시(대부분) 혹은 정부이면서 관리자는 교육감(대부분) 혹은 정부(기관)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관리자를 서울시로 이관 및 변경

○ 종로도서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정부이고 관리를 문화재청이 하며, 건물의 소유자는 서울시가 그것의 관리는 교육감이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종로도서관 외에 남산도서관의 경우도 토지의 소유는 정부가 하고 관리는 산림청이 하며, 건물의 소유자는 서울시이면서 관리는 교육감이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 이 경우에 포섭시킬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는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동작도서관, 마포평생학습아현분관이 있다.

○ 공공도서관에 관한 정책도 ‘지방분권’ 과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문화’ 영역에 속하는 사무로서 국가가 굳이 쥐고 있어야 할 일종의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정부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한 정부 소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이 소유하고 관리하더라도 그 원래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재산과 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도서관에 대해 재산적, 관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 권한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정한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허가에 소유되는 시간 및 여러 정
 치적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취득 신청부터 1-3년 가량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추진방안 및 내용

○ 토지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정부(기관)이면서, 건물의 소유자가 서울시(대
 부분) 또는 정부이면서 관리자는 교육감(대부분) 혹은 정부(기관)인 경우,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은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관리자를 서울
 시로 이관 및 변경하여 공공도서관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
 이 요구된다.

-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정한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신청에 대하여 정
 치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1-3년간의 시간 소유가 예상된다.

〈표 38〉 추진방안

| 기간 | 수단 |
|---------|---------------------|
| 1-3년 예상 | 「국유재산법」에 따른 취득절차 진행 |

〈표 39〉 개선내용

| 연번 | 도서관명 | 소유 및 관리 현황 | | | |
|----|--------|------------|---------------------|-----|-------------|
| | | 토지 | | 건물 | |
| |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 1 | 정독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 | 종로도서관 | 정부 →서울시 | 문화재청 ¹⁸⁾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3 | 남산도서관 | 정부 →서울시 | 산림청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4 | 동대문도서관 | 동대문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5 | 어린이도서관 | 정부 →서울시 | 문화재청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 | | | | |
|----|------------|------------|-------------|------------|-------------|
| 6 | 용산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7 | 도봉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8 | 강남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9 | 강서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0 | 개포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서울시 | 교육감 |
| 11 | 강동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2 | 구로도서관 | 서울시 | 시장(도시활성화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3 | 서대문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4 | 고척도서관 | 서울시 | 시장(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5 | 양천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6 | 동작도서관 | 정부 →서울시 | 교육부 | 서울시 | 교육감 →서울시 |
| 17 | 송파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송파구 | 구청장 |
| 18 | 마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9 | 노원평생학습관 | 노원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0 | 고덕평생학습관 | 강동구 | 구청장 | 서울시 | 교육감 |
| 21 | 영등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2 | 마포평생학습아현분관 | 정부 →서울시 | 교육부 →서울시 | 정부 →서울시 | 교육부 →서울시 |

5) 구조개선 4과제

(1) 개념

토지의 소유와 관리를 자치구의 장이 맡으면서 건물의 소유자는 서울시이나 그 관리를 교육감이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그 관리는 서울시가 담당

○ 세 곳의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보충성의

18) 공공도서관의 본래 기능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가 계속 관리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원리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게 공공도서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동대문도서관은 토지의 소유가 동대문에게, 그 관리는 구청장에게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게 있으나 그 관리는 교육감이 하고 있는 형태이다.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두고 3자가 관계를 갖고 있는 다소 복잡한 형태이다.

- 동대문구청장이 해당 도서관을 직영하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동대문구로 이양하고 도서관의 문화정책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방법이다.

(2) 추진방안 및 내용

○ 토지의 소유와 관리를 자치구의 장이 현재 맡고 있으면서 건물의 소유자는 서울시이나 그 관리를 교육감이 하는 경우인데, 지방분권 및 보충성의 원리의 실현 차원에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그 관리는 교육감에서 서울시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 우선 서울시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리 및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현장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검정되는 한 자치구로 건물의 소유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울시 전역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정책 차원에서는 그 관리권을 서울시장 소속의 서울도서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서울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추진 시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40〉 추진방안

| 기간 | 수단 |
|------|------------------------------|
| 1-2년 | 「공유재산법」 및 서울시 사무 및 조직 조례의 개정 |

〈표 41〉 개선내용

| 연번 | 도서관명 | 소유 및 관리 현황 | | | |
|----|----------------|------------|----------------|------------------|-------------|
| | | 토지 | | 건물 | |
| |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소유자 | 재산관리자 |
| 1 | 정독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 | 종로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교육감 |
| 3 | 남산도서관 | 정부 | 산림청 | 서울시 | 교육감 |
| 4 | 동대문도서관 | 동대문구 | 구청장 | 서울시 →동대문 구 | 교육감 →서울시 |
| 5 | 어린이도서관 | 정부 | 문화재청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6 | 용산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7 | 도봉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8 | 강남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9 | 강서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0 | 개포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서울시 | 교육감 |
| 11 | 강동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2 | 구로도서관 | 서울시 | 시장(도시활성화 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3 | 서대문도서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4 | 고척도서관 | 서울시 | 시장(청소년정책 과)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5 | 양천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서울시 | 시장(서울도서관) |
| 16 | 동작도서관 | 정부 | 교육부 | 서울시 | 교육감 |
| 17 | 송파도서관 | 서울시 | 시장(공원조성과) | 송파구 | 구청장 |
| 18 | 마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19 | 노원평생학습관 | 노원구 | 구청장 | 서울시 →노원구 | 교육감 →서울시 |
| 20 | 고덕평생학습관 | 강동구 | 구청장 | 서울시 →강동구 | 교육감 →서울시 |
| 21 | 영등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 교육감 | 서울시 | 교육감 |
| 22 | 마포평생학습아현분 관 | 정부 | 교육부 | 정부 | 교육부 |

3. 공공도서관 이용규정 정비

○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간의 이용규정이 상이한 것은 도서관 운영환경이 제각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뢰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 서울도서관으로 이관되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의 이용규정 통일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 상호대차, 대출기간의 상이함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도록 한다.

○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간의 이용규정 통일
- 144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도 이용에 따른 상이한 규정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존재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규정의 통일을 꾀하도록 한다.

제3절 갈등관리 방안

1. 신분변동과 도서관장의 직급

○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은 ‘교육’ 행정이라기보다는 ‘문화’ 행정 사무에 해당되고, 1990년대 이후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은 자치구에 의해 설치된 반면 교육청에 의해 설치된 경우는 없다.

- 2007년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선진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 하에 교육, 문화, 스포츠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 이러한 이유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시로 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 직원의 신분변동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일원화에 따른 도서관장의 직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한다.¹⁹⁾

○ 직원의 신분변동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사자 역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불편은 공익에 봉사하는 자로서의 사명에 입각하여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지원을 서울시로 소속을 변경할 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사서직에 한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또한 소속 변경 시 행정직 직원의 경우 지원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 명령에 의해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

- 공무원시험 등을 통해 교육청소속으로 임명은 받을 때 신뢰하였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교육청소속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서관행정체계 일원화를 통

19) ,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 분석 연구 -제1,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4호(2014), 261면 참조.

해 도달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사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자발적인 신청과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자발적 신청자가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일원화에 따른 도서관장 직급의 문제

- 현재 서울도서관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 사업소)임을 고려할 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시로 이관할 경우, 서울도서관장의 직급이 이관하여 오는 자에 비해 낮거나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처리상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

- 서울도서관장의 직급보다 높은 자의 직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는 다음 몇 가지 해소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첫째, 서울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 둘째, 이관되어 오는 도서관의 상급직급을 하향조정하되 이관 시의 상위 직급 인력을 교육청이 흡수하는 방안

- 셋째, 현재의 직급을 유지하되 상위직급의 인력을 교육청이 흡수하는 방안

- 넷째, 퇴직 시까지 교육청소속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 이관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어서는 일원화는 요원할 수 있고, 불이익을 안기면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관되어 오는 상급직원의 자의 직급을 퇴직 시까지 인정 및 승진도 허용하되 혹 서울도서관장이 직급이 낮은 경우라 할지라도 서울도서관의 도서관법상 지위를 우선 적용하여 업무상의 지시는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관하여 오는 상급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직급과 업무처리상의 상하관계를 별도로 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동시에, 서울도서관장의 직급을 4급 사업소에서 2급 내지 최소 3급 정도

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광역편입 원칙

○ 이관되어 오는 교육청소속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자치구로의 발령을 희망하지 않는 한 서울시로의 편입이 바람직하다.

- 서울시와 자치구 간 봉급 등 여러 근무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광역단위로의 편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센티브를 부여한 자치구로의 이관

- 거리나 개인적 이유로 자치구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3개년 단계추진 원칙

○ 3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조례 제·개정하여 추진

- 서울시 공공도서관 일원화에 관한 논의는 이미 27·8년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 기간 안에 서울시장과 교육감 간의 합의에 기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에 따라 추진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도서관 간의 분절적·비소통적 서비스 제공방식은 일정한 기간 내, 즉 3년 정도에 해소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개선하여야 한다.

- 앞서 서울시 도서관 3개 그룹의 기능들을 분석해 보았거니와, 사실상 각 공공도서관의 기능들이 대체적으로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각 도서관 간에는 상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불편은 시민

에게 돌아가므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만 소통되는 서비스방식(가령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서울도서관과 연계하고, 개별 자치구 공공도서관 내에 서만 호환되는 서비스방식을 25개 자치구의 모든 공공도서관 간에도 연계가 가능하게 하여 이를 서울도서관과 소통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전체를 서울도서관의 정보제공서비스 방식 하에 통합하는 것이 시민이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

제4절 법제도적 실행 방안

1. (가칭)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 조례’ 제정

○ 2006. 10. 4.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는 서울도서관이 2012년 설치됨에 따라 광역단위의 도서관 정책과 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서울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 동법에 따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사항을 늦게나마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 아래의 조례 제정이 요구되는 다른 이유는, 현재 서울시 공공도서관들이 3개의 주체에 의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 바, 가령 A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나 서울도서관에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데, 이는 「도서관법」 제22조 및 동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서울도서관이 서울전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바, 이에 대한 조속한 요구가 필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서울도서관에게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분절적 형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며,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존재하나 이 조례는 「도서관법」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까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집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므로 이것의

개정만으로는 위에 제시한 2대 과제를 완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 조례의 명칭은 (가칭)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 조례’ 라 칭하고 기본적 체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⁰⁾

- 이 조례의 제정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관한 조례’ 라고도 할 수 있다.

- 행정적 입법 반영 사항: 행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담아야할 사항은 해당 사업에 따른 추진기구, 조직, 인력, 직급에 관한 사항이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공무원들의 가장 저항을 받는 부분이 일원화에 따른 승진상의 불이익,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이관 등이 핵심 사항인바,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 보장이 조례에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아가 인력, 조직의 이관에 따라 해당 시설물(건물, 토지)의 이관도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재정적 입법 반영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중앙에서 직접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는 재원을 서울특별시의 장 소속으로 지원을 이관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지원하는 재원은 무의미하므로 삭제하도록 한다.

<표 42> 서울시 공공도서관 일원화 조례(안)

| (가칭)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 조례(안) | |
|-----------------------------------|---|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시책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시책에 따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 |

20) ,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15)에서 필자가 연구한 부분(148-151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 |
|--|---|
| | 으로 한다. |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의 공공도서관과 교육감소속의 공공도서관을 일반행정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 제4조 (시장 및 교육감 등의 책무) | ① 시장과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따른 이 조례의 조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시장과 교육감은 이관되는 기관에 속한 모든 관계자에게 일체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조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발전계획) | ①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서울특별시에 각각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평생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내 공공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소속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처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당시 교육감 소속 하에서 설치 및 운영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 조직, 시설 및 토지, 자원 등이 포함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이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1 내지 별표4*에서 정하는 단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조처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을 서울특별시 단위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과 광역분관으로 구성하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중앙도서관, 기초분관, 작은도서관으로 구성하여 상호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도록 한다. |
| 제6조 (공공도서관의 지식 정보제공기능) | ① 모든 이관되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는 시민이 요구하는 지식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의 시행을 전후하여 공공도서관이 제1항의 지식정보제공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을 자제하여야 한다. |
| 제7조 (공공도서관의 타임캡슐 ²¹)기능) | 서울시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이 시대의 타임캡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처를 다하여야 한다. |
| 제8조 | ① 시장과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 |

| | |
|---------------|---|
| (추진기구 및 인센티브) | <p>계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장과 교육감은 협의를 통해 이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위원회 설치와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은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과 교육감은 본 조례 시행 전 또는 그 후에 자율적으로 교육감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시장 소속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p> |
| 제9조 (이관원칙) | <p>① 교육감소속 공공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장 소속으로 이관하며 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p> <p>② 서울특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관 후 이관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서울특별시 내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타 공공도서관과 분절적·부족화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이관되는 자의 의사에 반하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서관의 현재 및 장래의 기능 2. 해당 지역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의 효과성 3. 공공도서관 간의 균등한 서비스 유지 |
| 제10조 (인력) | <p>①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감소속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서울특별시의 장 소속으로 이관되는데, 이관되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의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p> <p>② 시장과 교육감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상당 기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p> |
| 제11조 (직급) | <p>① 시장과 교육감은 이 조처를 추진함에 있어 이관되는 자의 승진 및 직급상의 강등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이관된 자가 서울도서관장의 직급보다 상위에 있게되는 때에도 서울도서관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의 신속한 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타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서관장의 직급을 3급 내지 2급으로 상향하여 임명할 수 있다.</p> |
| 제12조 (재정) | <p>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교육청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는 재원을 시장소속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게 지원하는 재원은 본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다.</p> |
| 제13조 | 현행 관련 법규 및 서울특별시의 타 조례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 |

| | |
|------------------------------|---|
| (시설 등) | 공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일체의 시설, 재산 등 행정재산은 시장소속으로 이관된다. |
| 제14조 (추진기구의 존속기간) | 제8조에 따른 추진기구는 3년간 존속한다. |
| 제15조 (과태료) ²²⁾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등에 따른 이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부칙 | |
|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유효기간) |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²³⁾

21) (Time Capsule)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개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물건 등을 모아 묻는 용기(用器) 또는 그러한 용기를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E%84%EC%BA%A1%EC%8A%90>).

22)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7조를 들 수 있다.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3) 뒤의 【부록 1】 참조.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 ‘구조개선 2과제’에 중점을 두고 법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시의 교육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생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와 제9절의 제35조 내지 37조를 삭제하여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한다.

〈표 4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p> <p>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p> <p>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p>제3조(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 |

| | |
|--------------------------------|--|
|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9절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제50조와 제51조를 폐지한다.

- 이때 동 규칙 제1조상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도 정리한다.

〈표 4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제3장 직속기관 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제50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1.1.)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삭제 |

| | |
|--|--|
| <p>2. <u>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u></p> <p>4. <u>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u></p> <p>5. <u>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u></p> <p>6. <u>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u></p> <p>7. <u>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2.)</u></p> <p>9. <u>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u></p> <p>④ <u>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u></p> <p>1. <u>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u></p> <p>2. <u>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p> <p>3. <u>자료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u></p> <p>5. <u>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p> <p>6. <u>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u></p> <p>7. <u>정보봉사에 관한 사항</u></p> <p>8. <u>독서지도에 관한 사항</u></p> <p>9. <u>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u></p> <p>10. <u>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u></p> <p>11. <u>삭제 <2014.9.12.></u></p> <p>⑤ <u>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1.)</u></p> <p>1. <u>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3. <u>순회문고에 관한 사항</u></p> <p>4. <u>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p> <p>5. <u>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u></p> <p>6. <u>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 |
|--|--|

| | |
|--|--|
| <p>7. <u>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u></p> <p>8. <u>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9. <u>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10. <u>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u></p> <p>⑥ 삭제 <2015.1.1.></p> | |
|--|--|

제5장

결론

○ 선행연구와의 기본적 차이

-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서울시 내로 제한하였고, 서울시 내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도서관이 2012년 신설됨에 따른 자치구 공공도서관과의 정책적 행정서비스 제공 네트워크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 또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일정한 협력관계를 각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해 봄으로써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양자의 이원화를 일원화 하는 데에만 분석과 절차 등에 초점이 모아졌던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 선진국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로부터의 교훈

- 일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전달구조가 다원화되어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직적 관계 및 수평적 관계가 통일적이며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형적인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면 서도 공익에 봉사하고 국가행정서비스 질의 개선보다는 개인적 불편함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거나 비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공공도서관을 현행처럼 서울시-교육청-자치구 3원화 유지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 문화행정 현실에서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공공도서관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

기도 하지만 그것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 헌법 제9조상의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법률로서 「도서관법」이 존재하는 데, 이는 정부조직법상의 기능을 고려하고 나아가 공공도서관이 ‘교육행정’ 이라기보다는 ‘문화행정’ 영역에서 국민 및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991년 3월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직속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기형적 행정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일원화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 현행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조직, 인력, 예산, 전산시스템의 분절적 구조를 개선하여 비통일화로 인한 중복낭비 비용을 시민과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상 지역대표도서관 정책의 실현

- 도서관법 제4장 제22조에는 시·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법률상 지방행정의 집행기관들(시장 및 교육감)이 이해하고 집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 이때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대표” 라는 명칭으로부터 2개 이상의 복수의 대표도서관으로 설치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하나의 도서관을 정점으로 도서관시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1개의 대표도서관을 의미한다.

- 「도서관법」은 지역대표도서관에게 시책 수립권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서울특별시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들은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법·제도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

○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조치사항

- 서울시의 경우는 「도서관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환경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요구된다.

- 첫째, 서울도서관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청 소속 22개 공공도서관을 서울 5개 권역에 걸쳐 3-4개씩 서울도서관의 광역분관 형태로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일원화를 꾀하도록 한다.

- 둘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도서관 및 교육청도서관과는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 5개 권역에 걸쳐 분관으로 배치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하에 위치시켜 ‘서울도서관-서울 5개 권역 분관 도서관-자치구 도서관’ 간의 수직적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서울 5개 권역으로 이관·배치된 분관들 간에 그리고 자치구도서관들 간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5개 권역 분관도서관 상호간 이용규정의 통일화와 자치구도서관 상호간의 이용규정 통일화도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넷째, 서울도서관을 정책타워(Policy Tower)로 하는 수직적·수평적 연계 조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3개년에 걸쳐 완수하도록 한다.

○ 서울시 소속으로의 완전 일원화 외에 검토 가능한 대안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속으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3년에 걸쳐 완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일거에 오랜 기간 묵은 숙제를 단번에 해소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단기간에 선진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반발이 심하게 예상되어 갈등 규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둘째 방안으로, 서울시장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교육청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비교적 작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첫째의 방법과 내용면에서 비교할 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성가신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첫째의 방안과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방안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인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서울시 소속으로 일원화 하고 일원화를 종료하는 방안이다. 갈등이 비교적 작다는 것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어중간한 서비스전달체계를 계속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일원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차 제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서울시로 일원화에 따른 불이익 예방

- 공공도서관의 일원화를 논할 때 가장 큰 장애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자들의 불이익 발생이라는 점이다.

- 특히 양쪽을 일원화할 때 관장의 직급 조정은 매우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서울시로 일원하여 서울도서관의 관장이 정책, 인력, 인프라, 서비스제공 등에 있어 총괄권을 갖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자의 직급은 서울도서관장의 직급보다 높다하더라도 퇴직 시까지는 현 직급을 유지하여 주거나 교육청 소속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승진하게 되는 직급을 서울시 소속으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승진이 되도록 보장하지 않고는 일원화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일원화와 더불어 교육청공무원 및 근무자들이 애초 입사할 때 보장받았던 신분상의 보장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 광역도서관의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후원과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의 자율 및 독립성 보장

- 서울도서관에게 「도서관법」 제22조상의 지역대표도서관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도서관은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지원자이며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은 이 지원과 후원을 남용 및 오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 사무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

- 또한 제각기 다른 이용규정 등 운영의 큰 틀의 통일성 확보는 운영의 독립성과 별개로 시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기홍, 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2호(2015)
- , EU와 독일의 도서관과 도서관 정책, 서울도서관 발표자료(2017.10)
- 곽동철,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권 1호(2016)
-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20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15)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17년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2018)
- 서울특별시,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2012)
- 박진규·김인식,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2016)
- 박현화·이성숙, 지역 지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권 3호(2015)
- 이상복·배경재·류주현·박옥남, 교육청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경기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권 3호(2013)
- 윤희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권 3호(2009)
-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원대한 비전 -몽상과 반역을 위한 고뇌-, 서울시민대토론회 발제문(2017.11)
- 장우권·박성우·여진원,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권 1호(2014)

정미연,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스템 체계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2013)

정원임, 공공도서관의 혁신적 정보서비스,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2014)

조금주,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 나무연필(2018)

조찬식,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5권 3호(2008)

차성중,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 분석 연구 :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권 4호(2014)

한윤옥·곽철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1호(200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libportal/main/main.do>

日本図書館法 <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O118.html>

日本図書館基準. http://www.mext.go.jp/a_menu/01_1/08052911/1282451.htm

【참고자료1】 일본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 현황

○ 일본의 동경도의 공립도서관은 2017년 4월1일을 기준으로 2016년도 실적들을 조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²⁴⁾. 우선, 각 자치단체의 도서관 조례에 기재된 도서관수를 기준으로 총계를 보면, 독립도서관 2관을 포함한 전체 총수는 387관이 있으며, 이중 시부에 150관, 정촌부에 5, 섬지역등에 5개 등이다.

○ 동경도의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2곳의 독립도서관인 중앙도서관(中央圖書館, 港區)과 다마도서관(多摩図書館, 國分寺市)의 경우와 구 및 시부의 경우 연간개관일수가 300일을 넘고 있으나(구부 318.4일, 시부 312.7일), 정촌부와 도서부의 경우 300일을 밑돌고 있다(정촌부 288.6일, 도서부 279일)

○ 그러나, 장서수에 있어서는 구부나 시부가 많았으나(구부 27,469,599권, 시부 18,686,618권),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는 정촌부와 도서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정촌부 7.73권, 도서부 5.45권).

○ 인구수 대비 장서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장서수가 있으며, 정촌과 도서부의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장서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록 표 1> 일본 동경도 공공도서관 현황

| 지역 | 인구(명) (A) | 조례에 기재된 도서관수(관) (B) | 연간개관일수(C) (1관당평균개관일수: C/B) | 장서수 도서총수(권)* (1인당장서수:D/A) |
|-----|--------------|------------------------------|----------------------------------|---------------------------------|
| 東京都 | 13,569,660 | 2 | 612 (306) | 2,536,959 (0.18) |

24) https://www.library.metro.tokyo.jp/lib_info_tokyo/uploads/296ippann.pdf

| | | | | |
|---------------------------------|----------------|------------|---------------------------|------------------------------|
| 구부계 (区部計) | 9,338,582 | 225 | 71,656 (318.4) | 27,469,599 (2.94) |
| 시부합계 (市部計) | 4,147,238 | 150 | 46910 (312.7) | 18,686,618 (4.50) |
| 정촌합계 (町村部計) | 58,162 | 5 | 1443 (288.6) | 449,734 (7.73) |
| 도서부 ²⁵⁾ 합계 (町村部計) | 19,810 | 5 | 1395 (279) | 108,075 (5.45) |
| 구시정촌 도서계 | 13,563,79 2 | 385 | 121404 (315.3) | 46,714,026 (3.44) |
| 동경도계 | | 387 | 122016 (315.2) | 49,250,985 (3.62) |

자료: https://www.library.metro.tokyo.jp/lib_info_tokyo/uploads/296ippann.pdf* 도서총수로 잡지, 신문, 레코드, 카세트, CD, DVD, 필름, 그 외 등은 제외된 순수도서만 해당

○ 시부 및 정촌부를 제외한 동경도내 23개 자치구만의 도서관수를 보면 225개의 도서관이 있다. 동경도 23개 구의 인구는 9,338,582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다.

○ 연간 개관일수를 보면 구부의 총 개관일수는 71,656일이며 23개 자치구 평균은 3,115일이다.

○ 23개 자치구의 도서총수는 27,469,599권으로, 1자치구당 평균 1,194,330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장수는 순수 도서의 통계치이다.

<부록 표 2> 일본 동경도 23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현황(1)

| 지역 | 인구(명) | 조례에 기재된 도서관수(관) | 연간개관일수 | 장서수 |
|------|------------|-----------------------|--------|-----------|
| | | | | 도서총수(권)* |
| 東京都 | 13,569,660 | 2 | 612 | 2,536,959 |
| 千代田区 | 60,297 | 5 | 1,732 | 575,073 |

25) 내에도 섬지역이 존재하고 이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다.

| | | | | |
|------------|------------------|------------|---------------|-------------------|
| 中央区 | 152,174 | 3 | 1,004 | 598,600 |
| 港区 | 251,015 | 7 | 2,353 | 1,046,705 |
| 新宿区 | 339,339 | 11 | 2,927 | 977,456 |
| 文京区 | 214,683 | 10 | 3,393 | 1,131,694 |
| 台東区 | 194,639 | 5 | 1,473 | 604,539 |
| 墨田区 | 266,356 | 4 | 1,178 | 532,021 |
| 江東区 | 508,320 | 10 | 3,234 | 1,524,718 |
| 品川区 | 385,122 | 10 | 3,410 | 1,072,484 |
| 目黒区 | 275,278 | 8 | 2,527 | 1,171,916 |
| 大田区 | 720,518 | 16 | 5,438 | 1,827,599 |
| 世田谷区 | 896,057 | 16 | 5,058 | 1,890,570 |
| 渋谷区 | 223,412 | 10 | 2,971 | 911,602 |
| 中野区 | 326,839 | 8 | 2,650 | 973,461 |
| 杉並区 | 562,065 | 13 | 4,312 | 2,204,101 |
| 豊島区 | 284,921 | 7 | 2,178 | 744,606 |
| 北区 | 346,249 | 14 | 4,117 | 1,337,731 |
| 荒川区 | 213,203 | 5 | 1,399 | 800,265 |
| 板橋区 | 558,809 | 11 | 3,621 | 1,426,753 |
| 練馬区 | 725,608 | 13 | 4,076 | 1,755,190 |
| 足立区 | 682,950 | 15 | 4,620 | 1,578,415 |
| 葛飾区 | 457,927 | 12 | 3,831 | 1,279,099 |
| 江戸川区 | 692,801 | 12 | 4,154 | 1,505,001 |
| 区部計 | 9,338,582 | 225 | 71,656 | 27,469,599 |

자료: https://www.library.metro.tokyo.jp/lib_info_tokyo/uploads/296ippann.pdf

* 도서총수로 잡지, 신문, 레코드, 카세트, CD, DVD, 필름, 그 외 등은 제외된 순수도서만 해당

<부록 표 3> 일본 동경도 공공도서관 현황(2)

| 지역 | 내관자수 (명) | 대출자중 개인 등록자총수 | 개인 대출권수 | 예약접수총수 |
|-----|-------------|---------------------|------------|--------|
| 東京都 | 386,629 | 미 실시 | 미 실시 | 77 |

| | | | | |
|------------|-------------------|------------------|-------------------|-------------------|
| 千代田区 | 1,913,902 | 79,353 | 973,474 | 276,376 |
| 中央区 | 864,629 | 86,144 | 1,365,645 | 6,745 |
| 港区 | 미취득 | 127,859 | 2,396,383 | 9,693 |
| 新宿区 | 1,808,655 | 101,650 | 2,498,781 | 867,446 |
| 文京区 | 1,380,942 | 259,999 | 4,061,484 | 1,628,296 |
| 台東区 | 1,289,005 | 95,791 | 1,491,738 | 미취득 |
| 墨田区 | 934,281 | 76,526 | 1,242,050 | 381,773 |
| 江東区 | 3,281,695 | 194,134 | 5,103,440 | 1,821,400 |
| 品川区 | 2,209,514 | 176,977 | 3,124,996 | 1,019,681 |
| 目黒区 | 2,318,043 | 125,085 | 4,294,870 | 1,232,995 |
| 大田区 | 2,092,855 | 164,301 | 5,593,757 | 1,548,442 |
| 世田谷区 | 미취득 | 343,282 | 6,282,380 | 1,915,092 |
| 渋谷区 | 1,568,450 | 84,376 | 1,578,018 | 765,644 |
| 中野区 | 490,906 | 62,376 | 1,890,542 | 656,448 |
| 杉並区 | 2,761,796 | 177,770 | 4,523,324 | 276,643 |
| 豊島区 | 2,038,383 | 108,215 | 2,188,448 | 578,045 |
| 北区 | 3,020,194 | 204,860 | 3,942,709 | 270,847 |
| 荒川区 | 1,212,764 | 63,732 | 1,760,546 | 520,874 |
| 板橋区 | 2,999,660 | 200,415 | 3,262,277 | 832,280 |
| 練馬区 | 4,443,694 | 222,808 | 6,546,356 | 2,216,245 |
| 足立区 | 2,680,244 | 205,575 | 3,155,709 | 868,911 |
| 葛飾区 | 3,063,791 | 218,396 | 3,488,756 | 945,177 |
| 江戸川区 | 미취득 | 242,530 | 5,491,245 | 1,031,129 |
| 区部計 | 42,373,403 | 3,622,154 | 76,256,928 | 19,660,182 |

자료: https://www.library.metro.tokyo.jp/lib_info_tokyo/uploads/296ippann.pdf

* 도서총수로 잡지, 신문, 레코드, 카세트, CD, DVD, 필름, 그 외 등은 제외된 순수도서만 해당

2. 서비스 전달체계 및 구조

1) 일본의 공립도서관과 서비스 정신

○ 일본의 공립 도서관은 서비스 전달을 위해 도서관의 임무와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본 도서관협회는 1979년 총회에서 채택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개정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79年改訂』’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그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 “도서관” 관임을 표명하고 있다.

- 또한 ‘모든 국민은 도서관 이용에 공평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종, 신조, 성별, 연령과 처한 조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따라서, 서비스의 전달체계 이전에 서비스 자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본의 공립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시대적 특징을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본의 공립도서관서비스는 1950년의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관 봉사’의 이념을 두고 있으며, 그 구현화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며, 1960~70년대에 ‘중소도시의 공립도서관 운영’ (1963년), ‘시민 도서관’ (1970년)을 지침으로 한 발전 방향을 보였다.

- 도서관을 진정한 주민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도서관원의 노력, 독서 환경의 정비의 충실을 구하기 위한 주민요구가 점점 높아져,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시책과 대응에 의해 지방자

치단체의 도서관 서비스는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 도서관을 진정한 주민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도서관원의 노력, 독서 환경의 정비의 충실을 구하기 위한 주민요구가 점점 높아져,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시책과 대응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서비스는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행정개혁에 의해 도서관은 설립하더라도 충분한 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그 부족을 위탁, 임시직원 등으로 충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도서관법의 정신에 반하여 공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을 공사·재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와 사서를 파견회사에 의뢰하는 지자체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 1990년대에는 생애학습체계로의 이행, 정보네트워크 정비라고 하는 국가 정책 수준의 동향, 거기에 더해 90년대 이후 구조개혁, 분권추진, 규제완화라고 하는 정치와 경제의 변화를 받아 도서관 경영에 어려운 상황이 확대되고 있었다.

- 국민에 도서관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그것은 공공의 책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공개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은 구미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19세기 중반에 확립된 전통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근대도서관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도서관이 미설립된 정촌이 60%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적인 시정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민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필요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형성과정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이렇듯 이러한 내용의 공립도서관의 책무와 목표를 책정하여 공표하고, 공립도서관인 이상 적어도 상기한 수준 정도의 활동이 요구되었으나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도서관법의 기준과 혼동될 수 있어 이 제기에서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 특히 공립도서관의 역할과 요건으로서는 ‘인간은 정보 및 지식을 얻음

으로 성장하며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문화적인, 그리고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알 자유의 보장을 위해 노력함을 적시하고 있다.

○ 일본 공공도서관의 특징은 ‘도서관해원대(図書館海援隊)’²⁶⁾라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과제를 해결해 주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2010년 1월 5일 공공의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결성된 이후 지역에서 도서관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동경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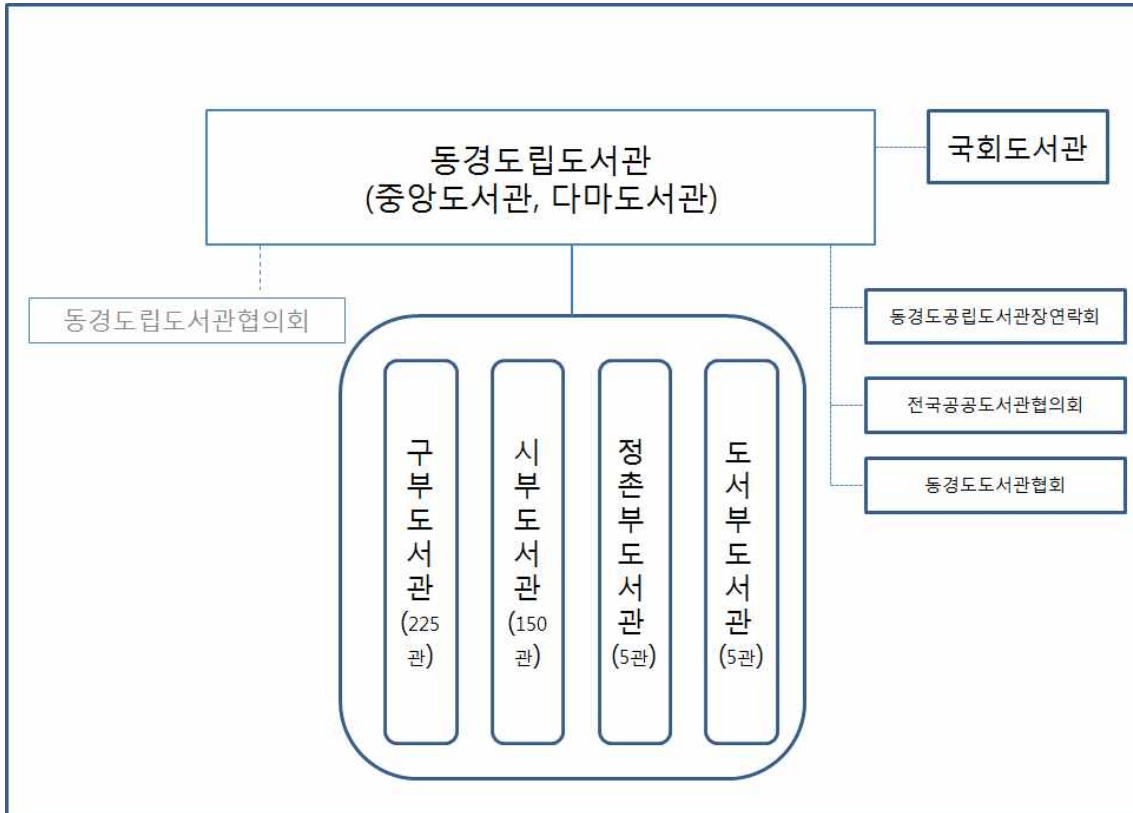
○ 동경도내의 독립도서관(2관)은 타 도도부현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구시정촌립도서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연계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수도 동경의 광역적 및 종합적 정보거점으로서 이용자의 조사연구, 학습 등을 지원
- 도내 구시정촌립도서관과 학교 등에 대한 협력지원

- 구시정촌립도서관(지역의 정보거점)
지역 실정에 적절한 장서구성 및 개인대출 등에 의해 보다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
- 국립국회도서관(국내유일의 납본도서관)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및 보존, 국회 활동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 사업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출판물을 제공하게 됨

26) ‘해원대’는 ‘에도 시대 후기 사카모토 료마를 중심으로 결성한 무역 결사대’를 일컫는데 이 의미를 살려 ‘도서관해원대’로 유래하였으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도서관결사대로 차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이후 다른 도서관의 참가 희망이 전해지면서 의료건강지원, 복지지원, 법률에 관한 도움, 지원 정보의 제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확대가 된 것이다(일본문부과학성 HP 2015; 박현화·이성숙, 2015, 403-40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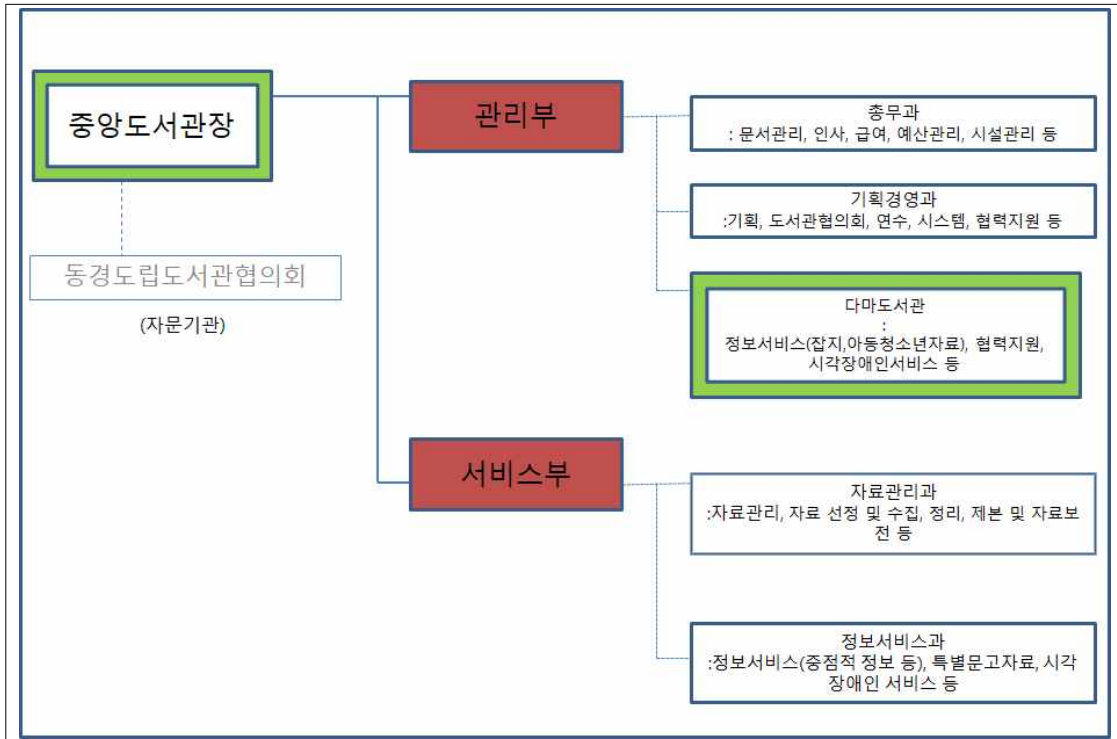
<부록 그림1> 일본 동경도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 동경도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독립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도서관장 총괄하에, 중앙도서관 및 다마도서관이 기능을 분담해 가며 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록 그림 2> 일본 동경도립 중앙도서관 조직도



자료 : <https://www.library.metro.tokyo.jp/guide/uploads/30jigyougaiyou.pdf>

- 관장의 자문기관으로 도립도서관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관장 직속으로 관리부와 서비스부로 조직을 이원화하고 있어, 서비스기능에 주요 기능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서에는 자료관리과와 정보서비스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 자료관리과에서는 자료관리, 자료의 선정과 수집, 정리, 제본과 자료보전 등을 담당하게 되고, 정보서비스과에서는 중정적인 정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특별문고자료나 시각장애자 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도립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도민의 조사연구 및 학습활동의 지원

(1) 관람서비스

- ① 통년 개관(휴관은 월2회와 연말연시, 특별정리기간)
- ② 신문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접속환경의 제공, 전자서적 서비스

(2) 레퍼런스서비스

- ① 내관, 전화, 메일 등 다양한 창구의 확보
- ② 데이터별 조사 방법안내 등 레퍼런스 정보의 제공

(3) 중점적 정보서비스

<중앙도서관>

- ① ① A 도시, 동경 ② 비즈니스, ③ 건강, 의료 ④ 법률관계를 1층에 집중배치
- ② 강연회, 자료전시 등과 조합한 과제 해결을 지원

<다마도서관>

- ① 잡지(동경매거진뱅크), 아동 및 청소년자료에 특화
- ② 동경매거진뱅크칼리지 사업의 전개
- ③ 동경도 아동,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센터로서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

(4) 특별문고

- ① 에도성의 설계도 및 목판화(니시키에:錦繪) 등 귀중 자료를 다수 소장

(5) 자료의 디지털화와 공개

- ① 동경 아카이브
- ② <도시, 동경의 기억>, < 에도, 동경 디지털 뮤지엄>

□ 도서관, 학교,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1) 구시정촌립도서관에 대한 협력지원

- ① 협력대출, 협력 레퍼런스서비스
- ② 구시정촌립도서관 직원의 연수
- ③ 강연회, 신관 견학회 등의 개최 및 관장 연락회 등을 통한 정보교환

(2) 학교지원 서비스

- ① 내관형 조사 학습의 지원

- ② 학교로부터의 지문, 독서 상담의 접수
- ③ 학교도서관과 수업을 위한 추천도서 엄선 지원
- ④ 출장 이야기회, 북토크
- ⑤ 교직원 연수에 강사 파견
- ⑥ 특별지원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에의 지원 등

(3) 정책입안지원 서비스

- ① 독립도서관의 풍부한 장서 및 노하우를 살려 도청 각국의 정보수집을 지원
- ② 각국의 의뢰에 대응한 레퍼런스를 수행, 자료 복사 등을 실시
- ③ 도청 게시관과 교직원 연수센터에서의 PR 등에 의한 이용을 주지

○ 동경도내의 공립도서관 장서 수는 약 4,876만권(2017년4월1일 현재)을 일괄하여 어느 도서관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검색한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자료 소장관이 아니 일상 이용하는 도서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검색화면에서는 종합검색, 동경관련, 논문 및 잡지기사, 본문 및 화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2개의 독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시정촌립도서관, 동경자료서치,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정보학연구소, 그 외로 구분하고 있다.

<부록 그림 3> 일본 동경도 공공도서관 종합검색 화면



자료: http://ufinity01.jp.fujitsu.com/metro/?page_id=8027

○ 특히 동경도립도서관은 구시정촌립도서관이 지역에 밀착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 우선, 협력대출사업으로 협력대출은, 구시정촌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요망이 있을 경우 도립도서관의 자료를 구시정촌립도서관에 대출하여 이용자의 요망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협력차(반송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 ① 동경도내의 구시정촌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에 주1회 협력차를 운행하여 자치단체 중심관에 협력 대출자료를 반송하고 있다.
- ② 구시정촌립도서관간의 상호대차자료(구시정촌립도서관으로부터 구시정촌립도서관에 대출하는 자료)을 받아 전달해 주고 있다.

○ 도서관에의 지원사업으로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1) 먼저, 구시정촌립도서관의 직원 대상의 지원이다.

① 도서관 직원 대상의 연수회를 실시(레퍼런스 연수, 어린이 독서에 관한 강좌, 장애인 서비스연수, 제본연수 등)

② 동경도도서관 연구교류회의 개최

③ 연수강사파견

④ 단기연수생의 수용

(2) 사무담당자회의 개최, 및, 사무국 :

협력사무담당자회, 협력레퍼런스 담당자회, 아동서비스담당자연락회, 청소년서비스 담당자회 등

(3) 협력대출, 상호대차에 관한 종합목록 작성 :

도립도서관 종합검색, 구시정촌립도서관신문잡지종합목록

<부록 그림 4> 일본 동경도 구시정촌립도서관신문잡지종합목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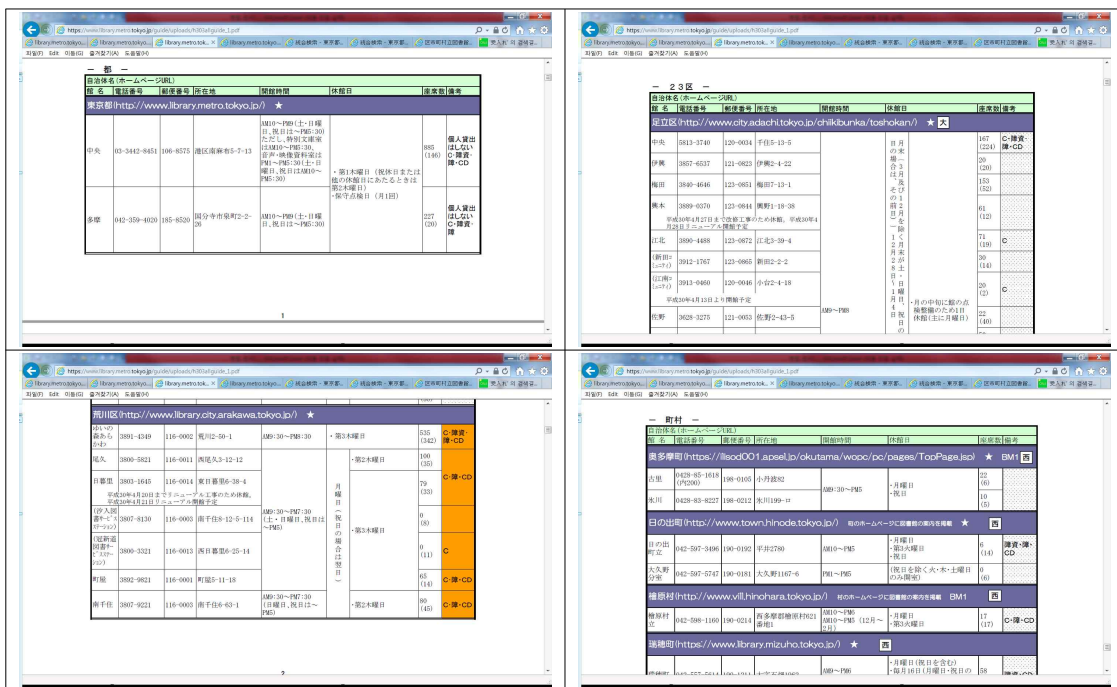


자료: http://magazine.metro.tokyo.jp/

(4) 도내공립도서관 정보의 수집과 제공(홈페이지 등재)

- ① 동경도공립도서관조사의 실시 및 정리,
- ② 동경도공립도서관 올가이드, 동경도공립도서관특별컬렉션의 작성
- ③ 메일 메거진(e-협력 매거진)의 발행

<부록 그림 5> 일본 동경도 도서관 올가이드



자료: https://www.library.metro.tokyo.jp/guide/uploads/h303allguide_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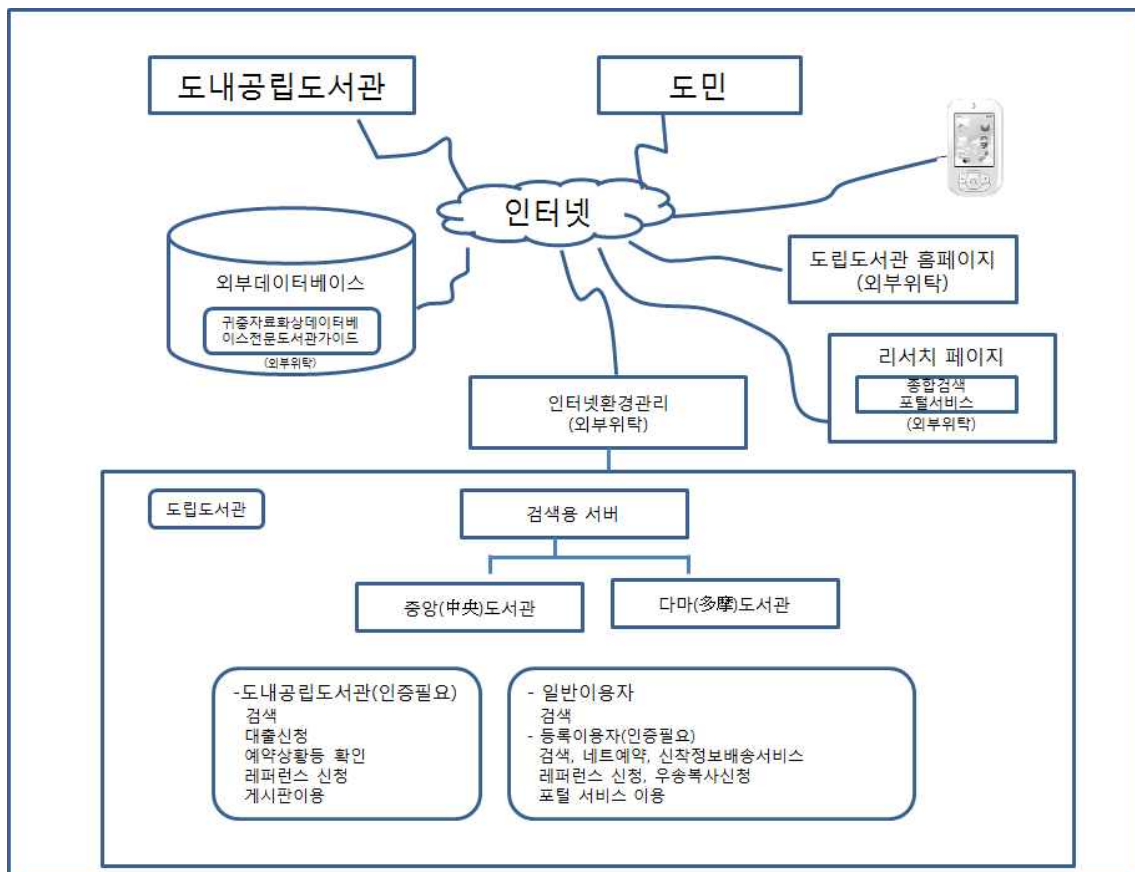
(5) 그 외

협력 레퍼런스, 협력복사, 문서의 배포, 도외 대출, 동경도공립도서관장연락회의 운영

○ 이외에도 동경도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동경도도서관 연구교류회, 도서관 견학회,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동경도내 공립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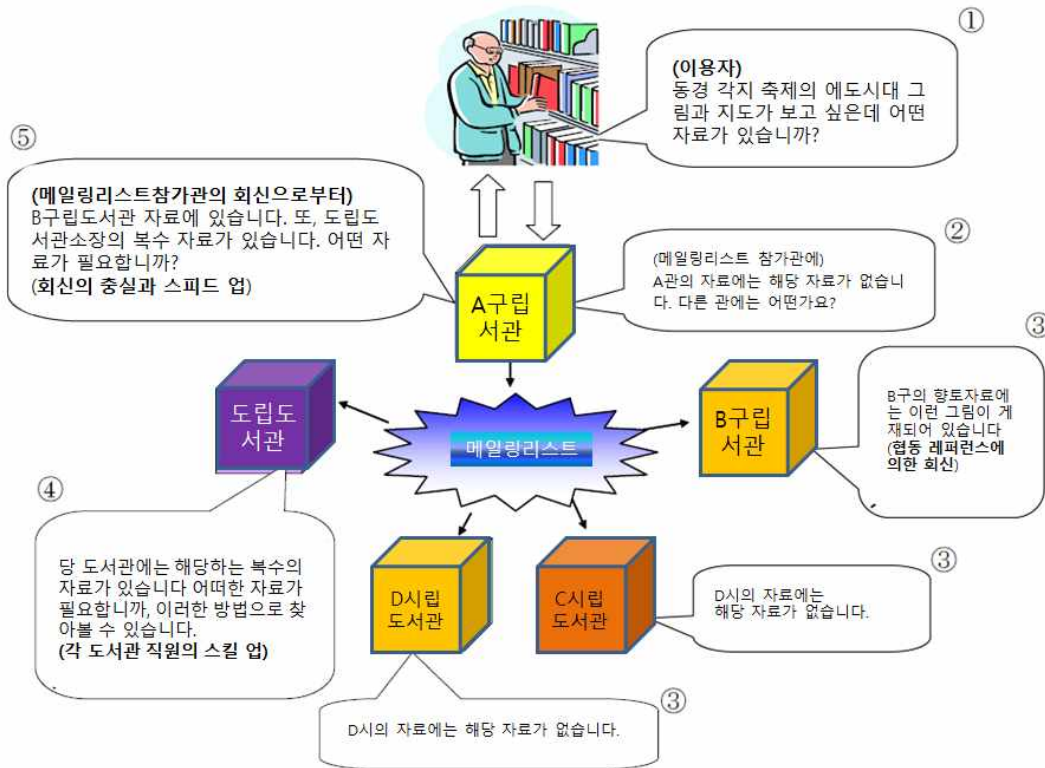
<부록 그림 6> 일본 동경도립 도서관 네트워크 개념도



자료 : <https://www.library.metro.tokyo.jp/guide>

○ 또한,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도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구립 도서관과의 협동 레퍼런스에 의한 회답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부록 그림 7> 일본 동경도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한 협동 레퍼런스 서비스의 체계



3) 동경도립도서관협의회와 서비스협력 체계구축

○ 동경도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대응하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관장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서관법 제 14조 및 동경도립도서관조례제3조에 기초하여 도서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 협의회의 도서관의 자기평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등 폭넓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록 그림 8> 제28기 동경도립도서관협의회위원명단

| 氏名 | 現職等 |
|--------|------------------------------------|
| 内田 剛史 | 株式会社ミュージアムメディア研究所代表取締役 |
| 小田 光宏 | 青山学院大学教育人間科学部教授 |
| 鎌倉 幸子 | アカデミック・リソース・ガイド株式会社リレーションズ・ストラテジスト |
| 川原田 康子 | 有限会社kwhgアーキテクト代表取締役 |
| 古川 正之 | 小平市教育委員会教育長 |
| 笹 のぶえ | 東京都立三田高等学校長 |
| 坂口 雅樹 | 元 明治大学学術・社会連携部和泉図書館事務長 |
| 富澤 良子 | ライター |
| 豊岡 弘敏 | 渋谷区教育委員会教育長 (任期:平成30年5月から) |
| 中井 孝幸 | 愛知工業大学工学部教授 |
| 松本 直樹 | 慶應義塾大学文学部准教授 |
| 森 富子 | 渋谷区教育委員会教育長 (任期:平成30年3月まで) |

자료: https://www.library.metro.tokyo.jp/guide/about_us/kyougikai/

4) 동경도도서관협회(東京都図書館協会:TLA)와 협력 구축

○ 동경도의 도서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대상으로 견학회, 강연회, 도서관협회보의 발간 등을 통해 도서관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독립도서관 자기평가를 통한 서비스체계 개선

○ 동경도립도서관자기평가는 제23기도립도서관협의회 제언<도립도서관의 서비스와 도서관개혁 평가에 관하여(2008년11월)>을 받아 시작한 제도이며, 독립도서관 사업의 효과적 실시와 도서관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자기평가의 방법은 도서관의 활동 결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의 3가지 카테고리별로 활동상황을 점검한다. 새로운 과제를 발견한 경우는 통상 업무 중에도 신속히 개선을 꾀함은 물론, 중점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년도 연차계획에 반영하여 진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① 내관형서비스에 관한 지표

도민 등이 직접 내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

② 비내관형서비스에 관한 지표

도민 등이 내관하지 않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구시정촌도서관을 통하여 받게 되는 서비스와 도의 시책, 학교교육을 통한 도민에게 환원하는 간접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비내관형 서비스 중에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지표

도민 등이 내관하지 않고 이용하는 서비스 중,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

④ 홍보에 관한 지표

홍보 활동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

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지표

<이용, 실태 만족도 조사> 및 이벤트, 연수 등의 참가자 설문조사에 의한 수치

○ 자기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독립도서관협의회의 의견을 더하여 공표하고 있다.

3. 시사점

○ 국립도서관과 동경도립 도서관의 유기적 관계

- 동경도의 387개 도서관은 독립 2관, 구부 225관, 시부 250관, 정춘부 5관, 도서관부 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 도서관은 특히 국회도서관이 동경도에 위치하여 있으며, 1천3백만의 동경도 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동경도립도서관(중앙도서관과 다마도서관)은 독립 도서관으로 광역의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도서관들은 우리나라에 최근 설립되고 있는 광역 단위의 대표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그간, 국회도서관에 대한 기능이 각 구시정촌립 도서관과의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제는 독립도서관에 역할이 분산되는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동경도도서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 동경도도서관협의회는 독립도서관의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문을 통해, 현재 공공도서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 파악, 설문조사, 주민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 개진과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언하고 있다.

- 이 도서관협의회의 제언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게 된 제도도 도서관들이 스스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 따라서, 도서관협의회는 형식적이고 관변적인 단체가 아닌, 실제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도서관이 처해 있는 문제점 들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제적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 동경도립 도서관의 자기평가 제도

- 평가제도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형평성,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 그러나, 동경도립도서관의 경우 동경도도서관협의회 제언을 받아 들여 정기적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협의회의 의견을 붙여 공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결국 독립도서관뿐만 아니라 385개 동경도관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현 도서관 행정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 종적, 횡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동경도공공도서관은 국가단위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의 도서관들과 종적 및 횡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료 공유, 도서대출, 레퍼런스, 자료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 이 뿐만 아니라, 차량을 통한 이동 도서관과 도서관 간 순회를 통한 도서 전달 시스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 협력시스템은 지역별 도서관 명칭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동경도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2】 「도서관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국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

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 3. 2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

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17.]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제10조 삭제 <2009. 3. 25.>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 3. 25.>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4.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 4. 5., 2012. 2. 1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11. 4. 5.>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 ⑧ 도서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16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 3. 25.>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2017. 12. 12.>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2016. 2. 3.>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 3. 25.>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 2. 3.>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 3. 25.>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한

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9. 3. 25.>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본조신설 2009. 3. 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6. 2. 3.>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제5장 대학도서관

제34조(설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

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제35조 삭제 <2015. 3. 27.>

제36조 삭제 <2015. 3. 27.>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9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④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준용)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7.]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

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2. 2. 17.]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9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3.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 2. 3.]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8조 삭제 <2009. 3. 25.>

부칙 부 칙 <제15167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3】 「동경도립도서관관칙」(東京都立図書館館則)

1987년(昭和62年) 3월20일 東京都教育委員会規則第11号

최종개정 2008년(平成20年) 12월25일

제 1 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동경도립중앙도서관(東京都立中央図書館)(이하 “중앙도서관“이라한다) 및 동경도립 다마도서관(多摩図書館)(이하 “다마도서관“이라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운영)

제2조 도서관법(1950년 법률 제118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중앙도서관은 주로 정보 서비스, 도내 공립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 등(이하 “도내 공공도서관 등“이라한다)에 대한 협력지원 및 도서관 미정비 지역에 대한 보완 서비스를, 다마도서관은 주로 잡지, 아동 자료 및 청소년 자료 등 정보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2 중앙도서관과 다마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관장 하에 상호 기능을 분담하고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 일체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중앙 도서관

(사업)

제3조 중앙도서관은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도서관 자료의 관내 이용
2. 이용자에 대한 정보 서비스
3. 도내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협력 지원
4. 도서 지역의 도서관 미정비 지역에 대한 보완 서비스
5. 도서자료(도서관 자료 중 시청각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의 마이크로 필름 및 전자 매체 및 도표에 관한 필름, 테이프 등의 제작
6. 시사 정보 및 참고 자료의 소개 및 제공
7. 시각 장애인에 대한 자료의 낭독 및 녹음
8. 도서 자료 등의 복사
9. 도서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10. 해외 도서관 등과의 교류

11. 기타 중앙도서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관 시간 및 휴관일)

제4조 중앙도서관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그러나 동경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한다)는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입,퇴관)

제5조 중앙도서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지품을 소정의 사물함에 수납한다.

2 중앙도서관장(이하 이 장(章)에서는 “관장“이라한다)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폐를 끼친 자에게 도서관 자료의 열람 정지 또는 퇴관을시킬 수 있다.

(개가식 열람실 등)

제6조 중앙도서관의 입장객이 도서 자료의 열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시각 장애인 서비스실)

제7조 시각 장애인은 중앙도서관의 시각 장애인 서비스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이용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용자 하는 복제)

제8조 관장은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 등을 지정 후, 이용자의 기재에 따라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협력 지원에 따른 대출)

제9조 도내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해서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손해 배상)

제10조 중앙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손상 한 경우에는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 3 장 다마도서관 (사업)

제11조 다마도서관은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도서관 자료의 관내 이용
2. 주로 잡지, 아동 자료 및 청소년 자료 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 서비스
3. 주로 잡지, 아동 자료 및 청소년 자료 등에 관하여 도내 공공 도서관 등에 대한 협력 지원
4. 시사 정보 및 참고 자료의 소개 및 제공
5. 시각 장애인에 대한 자료의 낭독 및 녹음
6. 도서 자료 등의 복사
7. 시청각 자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관외 대출
8. 그 밖에 다마도서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관 시간 및 휴관일)

제12조 다마도서관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입 퇴관)

제13조 다마도서관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지품을 소정의 사물함에 보관한다.

2 타마도서관장(이하 이 장(章)에서 “관장“이라한다)은 도서관 질서를 교란하거나 타인에게 폐를 끼친 자에게 도서관 자료의 열람의 정지 또는 퇴관을 시킬 수 있다.

(개가식 열람실 등)

제14조 다마도서관의 입장객이 도서 자료의 열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시각 장애인은 타마도서관의 대면 낭독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이용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용자가 하는 복제)

제15조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 등을 지정 후, 이용자의 기재에 의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 배상)

제16조 다마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손상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시청각 자료의 관외 대출)

제17조 다마도서관의 시청각 자료의 단체에 대한 관외 대출 절차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청각 자료 이용)

제18조 관장은 제51조에 의한 대출을 받은 단체가 시청각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하거나 독촉하여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해 시청각 자료의 이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위임)

제19조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규칙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쿄도립, 타치카와, 오메, 하치오지 도서관 관칙의 폐지)

2 도쿄도립, 타치카와, 오메, 하치오지 도서관 관칙 (1987년 도쿄도교육위원회 규칙 제27호)은 폐지한다.

부칙 (1988년 교위규칙제17호)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년 교육위원회 규칙 제 18 호)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교육위원회 규칙 제 27 호)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교육위원회 규칙 제 24 호)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교육위원회 규칙 제 34 호)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교육위원회 규칙 제 75 호)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발행처 서울특별시
편집인 서울도서관장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부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전화 02)2133-0202
 팩스 02)2133-0390
제작담당 행정지원과장 박재민
 담당 김선국
발간등록번호 51-6113159-000006-01
ISBN 979-11-6161-405-2
판매가격 미매품
연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관련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